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김 면 · 이경진 · 김윤경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for Legislation and Operating System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김 면·이경진·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공동연구

---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장인호 경찰대학 부교수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
  - 2014년 시범평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양적 확산과 지방자치단체로의 수요 증가에도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낮음
  - 기존의 연구들이 평가제도의 발전단계에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거나 필요 영역을 개척하는 제도기반적 수준의 연구였다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의 연구가 필요함
- 중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방식에서 평가절차, 평가 결과의 환류 등 전체 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제도적 정합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문화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여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고, 총괄부처 및 지원기관 내에 평가를 전담하고 관리할 전담조직(부서) 및 전담인력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현재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문화영향평가 수행과 조직 관리를 뒷받침할 법리적 토대가 미약한 실정임

### 2) 연구 목적

- 문화영향평가를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으로서 실효적인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의 실천방안과 향후 과제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 연구 범위

- 문화영향평가의 시범평가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를 주요 분석시기로 정함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적 실태와 현황을 분석함. 또한 타 영향평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의 수행 차원에서 평가대상 및 선정방식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평가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을 도출함. 또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제반환경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표준 조례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관계자 설문조사, 표적집단인터뷰(FGI), 연구세미나

## 2. 정책 환경 분석

### 가.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 ■ 평가 수행

- 2014년 시범평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영향평가의 수행 건수는 계속 늘고 있음.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활용가능한 평가 유형 및 평가대상, 방식, 지표, 절차 등을 정한 최소한의 표준평가지침이 정립될 필요성이 큼
- 평가 수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은 점점 평이해져가고 있음. 또한 관련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평가대상 사업도 없는 상황에서 평가대상의 확보 및 평가의 적용 확장이 제약적임

- 평가지표의 경우 서로 다른 평가유형 및 대상 사업이라 할지라도 모두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고 있음. 또한 문화의 영향을 대부분 정성적 방식에 의거해 영향의 정도 혹은 수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그 수준을 보다 직관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됨

■ 조직 관리

- 문화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나, 기관 내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실, 부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관례상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를 문화정책과로 정하며 담당공무원을 1명 배치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평가 총괄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나타나있지 않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법 상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문화영향평가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 내에 공식적인 평가전담조직도 존재하지 않으며 6명뿐인 전담인력 수준에서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평가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함

■ 법·제도

- 평가제도 추진의 근거가 되는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선정기준, 평가시행 주체에 따른 평가유형, 평가유형별 평가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피평가기관이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개선방안 등을 반드시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와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고, 피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법적 기제가 없는 상태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각기 상이하어 지방자치단체들 간 평가 수행의 차이를 발생시킴

## 나. 타 영향평가(환경, 성별, 고용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 평가 수행
  - 타 영향평가들은 평가유형 및 평가대상별 표준 평가틀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식화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또한 평가유형 및 평가대상 사업별 표준 평가항목 및 지표,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표준 정량 평가방법론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조직 관리
  - 타 영향평가들은 평가를 총괄하는 관련 부처에 평가전담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최대 11인까지 배치하고, 평가전담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평가 업무를 부처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평가전담기관 내에도 독립적인 평가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담인력을 최소 8인에서 많게는 50인까지 배치하여 평가 업무를 지원, 관리하는 등 평가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법·제도
  - 환경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를 위한 단독 법 제정을 통해 유형별 평가 의무대상 및 평가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또한 일정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와 같이 기본법에 의거해 수행되는 고용영향평가도 평가대상, 평가 수행에 대한 법적 내용이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타 영향평가 관련법들은 모두 평가 사후의 이행, 개선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함을 통해 평가결과 및 환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나아가 영향평가의 확산 및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표준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음

### 3. 관계자 의견 조사

#### 가.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및 대상

- 문화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와의 정책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총 100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화영향평가에 경험이 있는 평가수행기관, 평가단, 평가 관련 자문 및 심사위원, 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 타 영향평가 연구 수행 경험자, 피평가대상인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 기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됨
- FGI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역 대학 교수 등 총 6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FGI는 사전회의 및 추가 서면조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재검토함

##### ■ 조사 내용

-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수행 개선방안,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개선방안,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문화영향평가 발전 방향을 묻는 종합의견으로 구성됨
- FGI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음. 주된 주제는 지역별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 및 애로 사항, 평가수행에 있어 표준 평가틀의 필요 여부와 바람직한 수행 방식, 평가 방식별 인센티브 방안,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필요 및 운영 방안, 문화영향평가 표준 조례안 마련 등임

#### 나. 조사 주요 결과

##### ■ 평가 수행 개선방안

- 평가대상 사업의 요소, 방향, 목표, 내용 등 사업이 지닌 핵심 성격에 따라 평가유형이 구분되어야 하며, 이후 각 평가유형별 표준 평가항목 및 평가

지표 등 표준 평가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 관리 개선방안

-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성을 위해, 평가 총괄부처인 중앙행정기관 및 평가전담 기관의 지정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함. 특히 중앙행정기관 및 평가전담기관이 주어진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 예산, 행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시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법·제도 개선방안

-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효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상에서 평가대상의 범위 및 의무 평가대상에 대한 지정 등 법정 평가로서 문화영향평가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큼
- 현재까지 「문화기본법」 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평가 수행 단계별 지침, 평가 관련 조직의 기능 등이 법안에 담겨서 평가 수행 및 조직 관리의 체계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큼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수행의 정합성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이 필요할 것임

## 4.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 가.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 개선

-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폴 개발
  - 평가대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폴’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 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 평가에 대한 편견과 남용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평가의 정합성을 확보를 위해 ‘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 나. 문화영향평가 조직관리 개선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명시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영향평가의 총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역할과 기능 명시함으로써 평가 시행 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관계 및 역할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과 평가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 다. 문화영향평가 법·제도 개선

-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
  -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으로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의 내용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
  -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법률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 라.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년도의 실행계획에 의한 운영이 아닌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 안에서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문화영향평가가 추진될 필요 있음
- 평가지표 개발 및 표준평가지침 마련 공시
  -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특성(예: 시설 건축 포함 여부, 인구의

이동 발생 여부, 문화재 복원 및 활용 사업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할 필요 있음

-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과 평가대상 선정 기준, 평가지표 정의, 평가유형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이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지침을 마련 및 공유할 필요 있음

-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의 지정은 평가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평가사업과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체계 제도화와 평가 확산 및 실효성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사회 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거부감 및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포지셔닝을 새롭게 할 필요 있음

-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제정

-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국가원리, 문화적 기본권, 「문화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본법」의 하위법이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방법·기준 등을 구체화시킨 개별법인 「문화영향평가법」 마련 필요함

## 5. 정책 제언

- 지속적인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문화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향평가의 운영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b>제2장 정책 환경 분석</b> .....	<b>9</b>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11
1. 평가 수행	11
2. 조직 관리	20
3. 법·제도	23
제2절 타 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27
1. 평가 수행	27
2. 조직 관리	32
3. 법·제도	37
제3절 소결	45
<b>제3장 관계자 의견 조사</b> .....	<b>49</b>
제1절 조사 개요	51
1. 조사 목적 및 대상	51
2. 조사 내용 및 방법	52

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55
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55
2.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개선방안	59
3.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개선방안	70
4.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방안	73
5.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향	77
제3절 표적집단인터뷰(FGI) 주요 결과	80
1. 사전회의의 주요 결과	80
2. FGI 주요 결과	81
3. 추가 서면자문 주요 결과	86
제4절 소결	90
<b>제4장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b>	<b>93</b>
제1절 개요	95
제2절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개선	96
1.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폴 개발	96
2.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99
3. 표준평가지침 마련	108
제3절 문화영향평가 조직관리 개선	110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명시	110
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113
3.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118
제4절 문화영향평가 법·제도 개선	122
1.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	122
2.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	128
제5절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130
1.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130
2. 평가지표 개발 및 표준평가지침 마련 공시	131
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132
4.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133
5.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제정	134

<b>제5장 결론 및 제언 .....</b>	<b>135</b>
--------------------------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7
-------------	-----

제2절 정책 제언	140
-----------	-----

<b>참고문헌 /</b>	<b>143</b>
---------------	------------

<b>ABSTRACT /</b>	<b>147</b>
-------------------	------------

<b>부록 /</b>	<b>151</b>
-------------	------------

【부록1】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 /	153
----------------------	-----

【부록2】 설문조사 양식 /	158
-----------------	-----

---

# 표 목차

〈표 2-1〉 전국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	11
〈표 2-2〉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평가 구분 및 유형	13
〈표 2-3〉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17
〈표 2-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영향평가 수행 체계 비교	19
〈표 2-5〉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내용	26
〈표 2-6〉 환경영향평가 평가유형별 세부 표준 평가항목의 예	29
〈표 2-7〉 성별영향평가 대상별 표준 평가항목 및 지표의 예	30
〈표 2-8〉 재정지원 고용영향평가: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표준 산출 산식의 예	31
〈표 2-9〉 타 분야 영향평가 평가 수행의 특징	32
〈표 2-10〉 타 영향평가의 중앙행정부처 및 담당 부서 현황	33
〈표 2-11〉 타 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 지정 및 기능	35
〈표 2-12〉 타 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 운영 체계	37
〈표 2-13〉 타 영향평가의 법률 체계	40
〈표 2-14〉 타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간 비교	45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2
〈표 3-2〉 설문조사 내용 및 응답 방식	53
〈표 3-3〉 표적집단인터뷰(FGI) 개요	54
〈표 3-4〉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56
〈표 3-5〉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의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60
〈표 3-6〉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61
〈표 3-7〉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63
〈표 3-8〉 문화적 영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도구의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66
〈표 3-9〉 평가지표 및 정량적 평가도구 제안	67
〈표 3-10〉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상위 6개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1
〈표 3-11〉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1순위):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2

〈표 3-12〉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상위 7개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6
〈표 3-1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시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77
〈표 3-14〉 사전회의의 주요 결과	81
〈표 3-15〉 추가 서면자문 주요 내용	88
〈표 4-1〉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일반 절차	100
〈표 4-2〉 문화영향평가 후보군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기준	101
〈표 4-3〉 문화영향평가 평가 신청을 위한 사전검토서 양식	101
〈표 4-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104
〈표 4-5〉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지표	104
〈표 4-6〉 2020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별 표준 평가절차	107
〈표 4-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지침 구성(안)	108
〈표 4-8〉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인력 구성(안)	117
〈표 4-9〉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123
〈표 4-10〉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125
〈표 4-1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확대 및 기반 구축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126
〈표 4-12〉 「(가칭)문화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 주요 내용(안)	129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8
[그림 2-1]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평가대상 사업 유형	15
[그림 3-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	55
[그림 3-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56
[그림 3-3]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 기여도 평가	57
[그림 3-4] 문화영향평가의 미래 기여도 평가	58
[그림 3-5]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의 필요성	59
[그림 3-6]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61
[그림 3-7]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62
[그림 3-8] 문화영향평가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65
[그림 3-9]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한 평가지표	67
[그림 3-10]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기관 인센티브 방안	69
[그림 3-11]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70
[그림 3-1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	72
[그림 3-13]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항목	74
[그림 3-14]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의 필요성	74
[그림 3-15]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	75
[그림 3-16] 문화영향평가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	78
[그림 3-17] 문화영향평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	79
[그림 4-1]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안)	95
[그림 4-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선 방향 비교	98
[그림 4-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운영 체계(안)	114
[그림 4-4]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목적	115
[그림 4-5] 문화영향평가 종합 운영 체계(안)	120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가.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처음 신설된 이후 2014년과 201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년 2020년에는 평가대상이 50건으로 증가하였고, 참여기관도 58개 기관(소관기관 47개, 수행기관 11개)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평가제도 운영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양적 확산과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가 이후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를 넘어 지역본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천적인 역할로의 자리매김과 평가제도 운영의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취해왔다. 하나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대상 선정 및 구체화를 논의하거나, 평가유형화 기준 및 표준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sup>1)</sup> 다른 하나는 국외 동향, 국외 영향평가제도<sup>2)</sup> 및 타 부처 영향평가제도의 사례를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입장은 문화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평가제도의 발전단계에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거나 필

---

1)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2017),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2018), <문화영향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2019)

2)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2003), <문화영향평가 관련 국외동향 및 사례연구>(2018)

요한 영역을 개척하여 제도의 기반을 놓는 연구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기조와 지원 근거를 담은 법제화 방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평가 수행 및 관리적 실천 방안을 제안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중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체계적인 운영 개선 모색

문화영향평가는 실제 제도 운영에 있어 다음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방식에서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환류과정에 이르는 전체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해 제도적 정합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영향평가가 산발적으로 시행될 경우,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역별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 방법론 등의 제도 운영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기준의 유형에 따른 평가 수행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함께 지역별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평가 수행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영향평가의 총괄부처 및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문화기본법」 상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법 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원기관 내 평가전담조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문화연구본부의 문화기반연구실 내 소수 인원만이 평가 수행의 전 업무를 책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영향평가들은 관련 부처 및 관련 부서를 평가 총괄부처로 정하고 관련법상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관리할 평가전담기관 및 그들의 기능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총괄부처 및 영향평가센터와 같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평가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이를 총괄하고 필요한 실무를 지원, 관리할 총괄부처 및 평가전담기관의 지정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할 방안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정책기조를 담은 선언적 의미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문화영향평가 수행과 조직 관리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래서 문화기본법의 개정 및 근거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 및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내용이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 조례안을 보급하여 늘어가는 평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상술된 문제들을 살펴볼 때,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를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실효적인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선행 수행된〈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문화영향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의 후속 연계성을 지니면서도,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문화영향평가 관련법의 구체적인 제·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지역별, 사업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표준 평가 수행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영향평가의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 총괄부처 및 평가전담 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평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체계를 제안하고 조직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천방안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시범평가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를 주요한 분석시기로 설정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황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수행 방식, 운영 체계, 법적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나.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 및 행정적 실태를 분석하고, 타 영향평가제도와 운영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다.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환경 분석 및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수준을 살피는 데 있다. 그래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태와 현황을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타 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또한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문화영향평가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수행 차원에서 평가대상 및 선정방식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제반환경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표준 조례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앞선 도출결과를 근거로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과 과제, 그리고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가. 문헌조사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문화영향평가 및 타 영향평가의 사례들을 둘러싼 정책 환경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주요 문헌은 문화영향평가 및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보고서, 기관보고서, 평가결과보고서, 논문, 법률 자료 등이 있다.

### 나. 관계자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은 피평가대상 사업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하여 문화영향평가에 평가수행기관/평가/자문/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 문화영향평가 및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참여자, 기타 관계자 등 총 100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제도 인식,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 측면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발전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 다. 표적집단인터뷰(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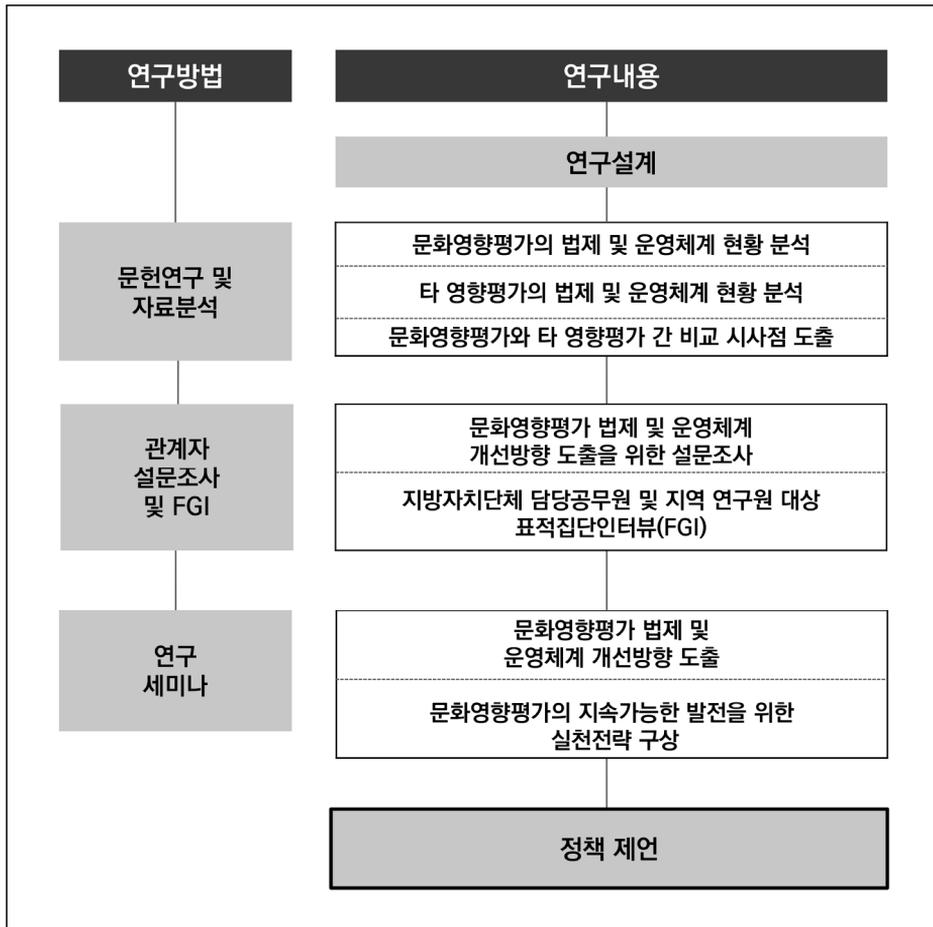
표적집단인터뷰는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결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적집단인터뷰는 사전회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문화영향평가경험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연연구원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사업 유형별 표준 평가 수행의 방법, 평가 총괄부처 및 평가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그리고 문화영향평가 관련법의 제·개정

안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적집단인터뷰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의 경험이 있는 출연연구원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표적집단인터뷰의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 라.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 개선방향 및 실천전략을 담은 내용들을 검토, 논의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관계자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제2장

정책 환경 분석



#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제 현황

## 1. 평가 수행

### 가.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과 2015년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별도의 조례 없이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수행한 문화영향평가 건수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0건(2020년 제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총 4건, 총 5건, 경상남도 창원시가 총 1건이다. 최근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전국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

연도별 평가건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합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2014	4건	-	-	-	4건
2015	5건	-	-	-	5건
2016	15건	-	-	-	15건
2017	15건	-	-	-	15건
2018	35건	2건	1건	-	38건
2019	35건	2건	4건	-	41건
2020	50건(예정)	-	2건	1건	53건
총 평가건수	159건	4건	7건	1건	171건

자료: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접속일 2020.6.14.)의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용역 자료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index.jsp>, 접속일 2020.6.14.)의 서울특별시와 경남 창원시 문화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최근 들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일부 타 부처에서 계획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을 권고(예: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하거나 의무화(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하고 문화영향평가를 계획에 포함한 경우 사업에 대한 가점(예: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부여하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행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나. 평가 구분 및 유형

### 1) 평가시행 및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 사례는 없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영향평가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그리고 별도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혹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에서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문화영향평가는 ③번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②번 방식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처음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①번 방식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sup>3)</sup> 기존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내 계획 및 정책, 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 ③번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3)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문화영향평가 중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계획 및 정책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때의 평가대상 선정은 대부분 ③번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영향평가대상 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제3차 문화도시 최종 지정 심의 전(‘21. 下)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물론, 2019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바 있는데, 이때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문화영향평가는 가점부여 예정으로만 명시되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한편, 문화영향평가의 관례적인 평가 운영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정책과이며,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별도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실제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평가 방식 및 유형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방식은 해당 정책, 계획, 사업에 대해 정책 소관 담당자가 직접 평가(이하, 자체평가)하게 하는 방식, 혹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통해 제3의 전문평가수행기관에 평가를 위탁(이하, 전문평가)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표 2-2〉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평가 구분 및 유형

구분	평가유형 및 특징			
평가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장 / 지방자치단체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평가방식	자체평가		전문평가	
	정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방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	
평가유형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전략)
	수준 진단 문화영향평가	기초 수준 문화영향평가	보통 수준 문화영향평가	종합 수준 문화영향평가
평가주체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 스스로 평가 + 전문가자문단 검토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 스스로 평가 + 전문가평가위원 평가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이 평가 (전문가평가단 평가)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이 평가 (전문가평가단 평가+정책담당자)
평가기간	1개월 이내	1~2개월	4~6개월	6개월 이상
평가 기대효과	문화가치에 대한 관점 및 인식전환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정책소관기관 담당자의 인식 제고		문화가치에 대한 관점 및 인식전환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적 관점의 진단을 통해 잠재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전환하는 대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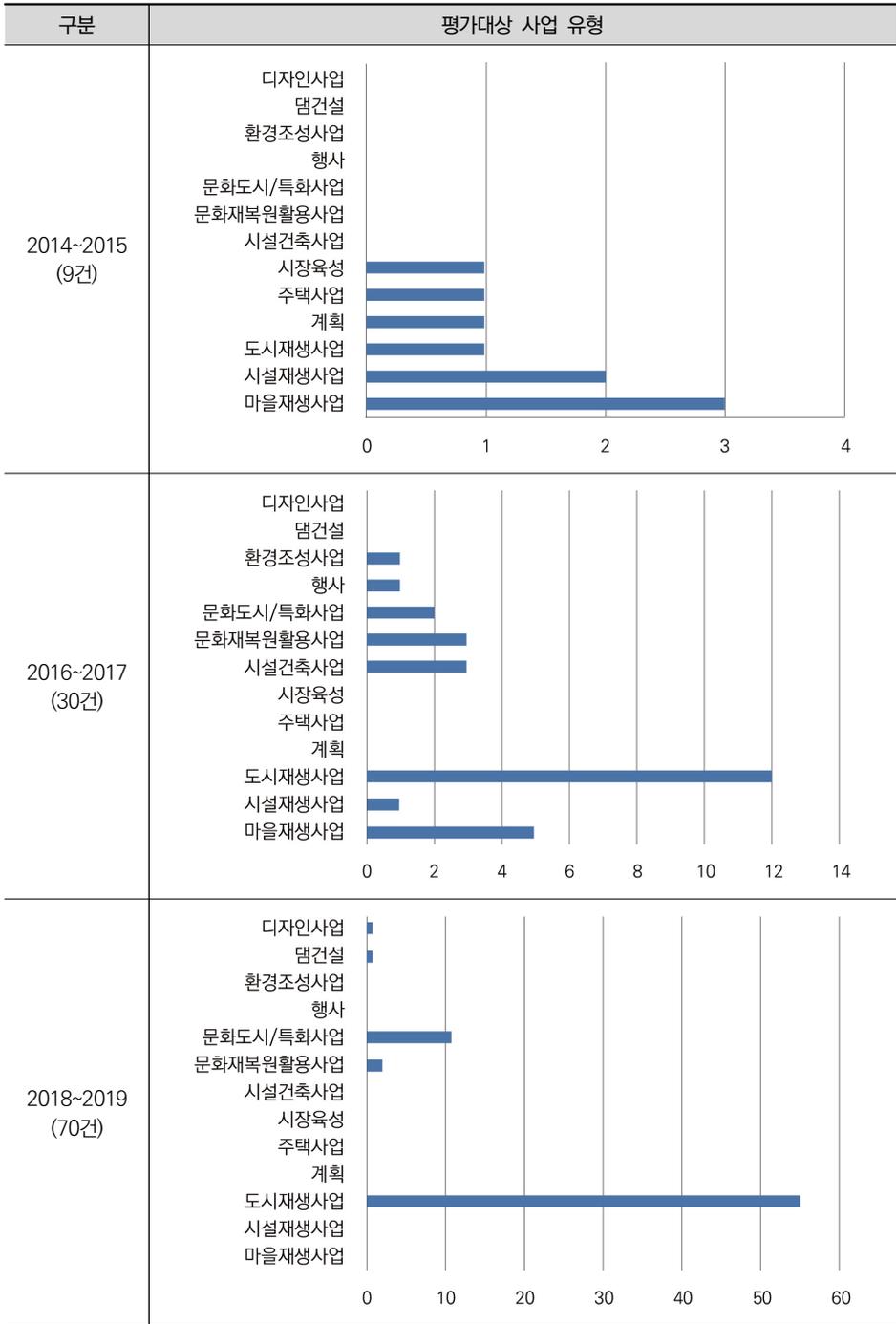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 문화영향평가 안내」, pp. 3-4. 참고하여 재구성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유형은 지금까지 평가 방식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던 것에서 벗어나, 평가심도의 수준 및 단계에 따라 진단평가-약식평가-기본평가-심층(전략)평가, 총 4단계로 나누어졌다. 진단평가와 약식평가는 정책소관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문가 평가단에게 검토 받는 자체평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는 제3의 전문평가수행기관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문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평가심도의 단계에 따라 평가 작업도 더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심도가 높은 유형일수록 평가기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각 평가대상은 사업 이행 수준에 따라 적합한 평가유형의 방식에 의해 사업이 지닌 문화적 영향을 평가받게 된다.

#### 다. 평가대상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은 점점 평이해져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2015년에는 총 9건의 평가가 진행되었고, 이때 평가대상 사업은 크게 6가지(마을재생사업, 시설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계획, 주택사업, 시장육성사업)로 나뉘었다. 2016~2017년에는 총 30건의 평가가 진행되었고, 이때 평가대상 사업은 조금 증가한 9가지(마을재생사업, 시설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계획, 시설건축사업, 문화재복원활용사업, 문화도시/특화사업, 행사, 환경조성사업)로 나뉘었다. 2018~2019년에는 총 70건의 평가가 진행되었고, 이때 평가대상 사업은 크게 5가지(도시재생사업, 문화재복원활용사업, 문화도시/특화사업, 댐건설, 디자인사업)로 나뉘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평가대상 사업 유형



특히 2018, 2019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의한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동일 사업(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평가 건수가 확연히 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한 2018년 35건, 2019년 35건의 문화영평가 중 도시재생사업은 각각 31건(88.6%), 23건(65.7%)으로 여전히 평가대상이 특정 사업 유형에 치우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평가대상의 종류와 사업 유형이 단순하다면 단기적으로는 해당 평가 사업유형에 대한 평가 지표 및 방법 등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영향평가의 적용 영역 확장에 있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를 위해 여러 차례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 추진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의무 평가대상 사업을 법으로 정함을 통하여 기본적인 평가대상의 확보뿐만 아니라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및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 불분명한 평가 추진체계와 평가대상 선정 기준 등이 충분히 연구되고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법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라.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 체계는 3대 평가영역(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에 따른 공통지표와 각 평가대상 사업을 고려한 특성화지표로 구분된다. 이 중 공통지표는 평가영역별 2개 지표, 총 6개 지표로 이루어지며, 지표별로 세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성화지표는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 체계는 2016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평가지표와 세부평가지표가 일부 변경되었다.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서로 다른 평가대상 사업일지라도 모두 지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사업의 유형,

성격, 진행 정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지표 및 핵심가치의 내용들이 모든 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어 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2018년 처음 도입된 약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사업에 맞는 평가지표 및 양식을 별도로 개발하여 평가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이를 평가에 계속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대상 사업에 따라 소수의 평가문항을 교체한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향후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평가대상 규정과 사업 담당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외에도 전문평가의 경우 평가수행기관에서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지표를 자율적으로 자체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실천한 사례가 현저히 적다. 2016~ 2018년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중 특성화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는 각각 15건 중 8건, 15건 중 4건, 25건 중 4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은 <표 2-3>에서와 같은 공통지표만 활용하여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가대상과 관련이 낮은 지표가 평가에 불필요하게 활용되었을 가능성, 공통지표 안에 제공된 다양한 측정문항으로 인해 지표의 추가 개발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3>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연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고려사항
2016~ 2019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문화향유수준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정체성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창조기반
2020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 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2020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참고

한편, 각 평가지표에 따른 문화의 영향은 대부분 정성적 방식에 의거해 영향의 정도 혹은 수준을 평가한다. 다만 진단평가를 제외한 평가유형에서는 문화 영향의 정도를 알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 및 해당 지역을 둘러싼 정량적 현황 자료를 평가의 근거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약식평가의 경우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환경 권’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시설 수 및 공간의 연간 운영 일수, 사업대상지 경계와 시설 간의 거리, 면적 등의 현황에 대해 숫자로 표기하게끔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량적 자료들은 대상 사업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만 활용될 뿐, 궁극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 문화의 영향을 정량적 방식에 의해 판단하고 그 수준을 보다 직관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 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 지역은 앞서 밝힌 대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시가 있으며 그 외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광역 단위의 지역에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별도 조례를 만들고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각 기관의 문화영향평가 소관부서(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경기도 문화중무과,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예술과)에서 평가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평가방식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제3의 전문평가수행기관에 위탁하는 전문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외 평가지표 및 절차에 관해, 경기도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전문평가의 절차 및 평가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평가유형, 절차,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고 있진 않으며, 제3의 평가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지표와 달리 자체 연구를 통해 2개 평가가치, 8대 평가영역, 26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대상 사업에 맞게끔 활용하고 있다.

〈표 2-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영향평가 수행 체계 비교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관련법	공통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조례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평가대상	공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개별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경기도 도지사	창원시장
평가운영방식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위탁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관 부서 직접 운영 (문화정책과)	소관 부서 직접 운영 (문화중무과)	소관 부서 직접 운영 (문화예술과)
평가수행 방식	중앙 및 지방의 소관기관 정책담당자(자체평가)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 (전문평가)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전문평가)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전문평가)	
평가지표	3개 평가 영역 6개 평가 지표 12개 고려 사항	2개 평가 가치 8개 평가 영역 26개 평가 지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	
평가절차 및 방법	유형별 평가 절차 및 방법 제시	평가 절차 및 방법 별도 제시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전문평가방식만 채택)	
평가추진 횟수	2014~2017, 연 1회 2018~2019, 연 2회	2018~2019, 연 1회	2018~2019, 연 1회	2020, 1회
평가건수	2014, 4건, 2015, 5건 2016~2017, 각 15건 2018~2019, 각 35건	2018, 2건 2019, 2건	2018, 1건 2019, 4건	2020, 1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20.6.14.)를 통한 관련법 검색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접속일 2020.6.14.)의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용역 자료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index.jsp>, 접속일 2020.6.14.)의 서울특별시와 경남 창원시 문화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향후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이 확대될 경우를 예상해볼 때, 지역마다 각기 다른 평가 수행 체계를 내세우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평가유형 및 유형별 표준 평가 프로세스가 정립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즉, 평가대상 사업 유형에 따라 평가대상, 방식, 지표, 절차 등을 정한 표준평가지침 마련을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체계 간의 정합성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 및 평가방식 등을 표준안으로 삼아 지역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유형 및 평가방식도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평가유형 및 유형별 표준화된 평가지침으로 정립되는 데 한계가 있다.

## 2. 조직 관리

### 가. 중앙행정기관 내 문화영향평가 담당 조직 체계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내에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실, 부서,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부처 조직도에 나타나있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담당 업무로 맡고 있는 조직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이며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한편, 평가에 관련된 업무는 공식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업무를 추진·수행하는 곳은 「문화기본법」 상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다. 또한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총괄 및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평가에 대한 최종 관리 및 운영 권한이 평가시행주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문화영향평가 관리 효율성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 나.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지원기관) 지정 및 역할, 기능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에 의거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29호, 2017. 8. 1.).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법 제4조제3항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지원기관을 (재)지정한다.

그러나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등의 역할이나 기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관련 법을 바탕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사항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그 역할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듯 현행법상에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년에 한 번씩 그 타당성을 재검토 받아 지원기관으로 (재)지정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목적인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는 물론 평가 제도의 운영이 불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 상 그 기능을 분명히 수행하는데 인력, 예산 등 물리적인 한계가 크다.

## 다.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내 평가전담조직 구성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2018~2019년 통계평가센터 내 정책평가팀을 구성하고 그 안에 문화영향평가단을 구성하였으나, 2019년 말 조직 전면 개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단이 해체되고 현재 문화연구본부 문화기반연구실 내에서 다른 연구 및 사업과 함께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은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할 독립적인 평가전담 조직도 없이, 실 차원에서 할당받은 수탁사업의 형태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기반연구실 내에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인원은 연구직 3인, 사업운영직 3인,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문화영향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에는 전담 인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구나 사업운영직은 문화영향평가만 전담하는 인력이나, 연구직의 경우 타 연구와 문화영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처해있다. 사실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전담조직 내에 평가대상 기준, 평가방법론 등 평가 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관련법 제·개정 지원, 평가추진 및 운영체계 개선, 평가수행기관 및 관련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및 평가수행기관 풀 관리, 사후조사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조직 내 일정 수준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업무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의 증원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전체 평가참여 인력의 수마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방식 및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평가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문화영향평가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해당 과 소속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순환보직에 의해 평가의 운영 및 관리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평가대상의 선정과 실제 평가에 있어서도 해당 공무원이 타 과에서 수립한 계획 및 정책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실무적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도 실제 평가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 3. 법·제도

#### 가.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및 일부 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4조, 시행규칙 제2,3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과 제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대체로 포괄적이어서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한승준·정상철·양혜원·채경진, 2017;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7; 이상열·박종웅·노수경, 2018; 이상열·이경진, 2019). 같은 맥락에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2018년, 2019년에 걸쳐 세 차례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먼저, 2018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188호) 입법이 예고된 바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2조제1항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문화도시 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평가유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문화영향평가’로, 협력체계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특정문화영향평가’로 이원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평가 결과 및 환류에 대한 법적 의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통과 시 강력한 문화영향평가 추진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2018년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9년 2월에는 당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 법률안들도 문화영향평가의 유형을 시행주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로 나누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에 한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거나 제외하는 규정 등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계획·대상 선정기준·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위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문화영향평가 추진의 근거가 되는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선정기준, 평가시행 주체에 따른 평가유형, 평가유형별 평가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외에도 피평가기관이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개선방안 등을 반드시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와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고, 피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법적 기제가 없는 상태이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2020년 6월 기준으로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5곳(서울, 경기, 전남, 충북, 부산)이며, 기초자치단체도 3곳(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춘천시)이 있다. 이 밖에 관련 조례 없이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등)<sup>4)</sup>도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때,<sup>5)</sup>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및 법안 등을 준비 중인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표 2-5>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 독자 조례의 유무,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평가 지침 등에 관해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을

4) 서울시 은평구 은평문화재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구립 구산동 도서관마을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실행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2018.5.)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2020.4.)

5) 정보공개포털(<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2020년 6월 기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를 마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문화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서로 간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sup>6)</sup>

또한 문화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 평가대상이 「문화기본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조례 내용과 더불어 평가 수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동시에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과정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또한 두 기관 간 평가 수행의 차이를 증폭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중앙과 지방 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평가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이 서로 다른 수많은 종류의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 문화영향평가 수행 방식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행·제도적 차이를 극복·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평가대상, 평가유형 및 유형별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환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유기적으로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6) 일부 의무사항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한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대상 선정 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받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등의 수준이다.

〈표 2-5〉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내용

구분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 시기	내용
광역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2017.9. 전부개정	제11조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을 포함 제5장(제25조~제31조)에서 문화영향평가 계획수립, 평가대상, 평가 방법,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재정지원 등을 규정
	경기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2018.1. 제정 2020.1 일부개정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 평가대상,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위원회, 문화영향평가 교육, 평가센터 설치, 전담직원 지정, 재정 지원 등을 규정
	전남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2019.10. 제정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 평가대상,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위원회, 문화영향평가 교육, 전담직원 지정,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을 규정
	충북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2020.4. 제정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 평가대상,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위원회, 문화영향평가 교육, 평가센터 설치, 전담직원 지정,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을 규정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2020.1. 제정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2020.1 일부개정	제14조제2항제9호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 기능으로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초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2. 제정	제4조 및 제6조에서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기능으로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경기 성남시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9.7. 제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을 포함
	강원 춘천시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8.11. 제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을 포함

자료: 이상열·박중웅·노수경(2018),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p.4.

참고: 이상열·이경진(2019), 「문화영향평가대상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p.39.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접속일 2020.6.1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20.6.14.)

## 제2절 타 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

본 절에서는 타 분야의 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을 살펴봄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 간의 법제 및 운영체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의 체계와 방식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 영향평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평가 역사를 갖고 지속적으로 영향평가 체계를 개선하면서 안정적인 운영과 평가 인식 확산을 꾀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위 세 영향평가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평가 수행

#### 가. 평가유형의 구분 방식

타 영향평가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시행 목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총 3개 유형의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 환경영향평가 중 제시한 환경오염의 저감 방안과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 2016).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주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형식을 나눈다. 평가주체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는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이 평가서를 스스로 작성하게 되며,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공공기관의 사업, 정책 및 관련 시행 중인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전문연구자(단체)가 평가서 작성을 담당한다.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의 성격에 따라 정책 고용영향평가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로 그 유형을 나눈다.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등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민간단체 및 일반국민 제안하는 과제를 평가대상으로 삼는다.<sup>7)</sup> 2016년부터 도입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당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다음 해 부처요구액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SOC사업, 다음 해 인력양성, 창업기업 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50% 이상 참여 사업으로 구분된 R&D사업 전체, 다음 해 부처요구액 연간 100억 원 이상인 문화·예술, 보건·복지,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기타 기재부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재정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정한다(고용노동부, 2020).

## 나. 평가유형 및 평가대상에 따른 표준 평가들

먼저 환경영향평가는 각 평가유형에 따라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각 유형별 평가대상의 종류 및 범위의 표준화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유형 안에서 평가대상별 표준 평가항목 및 항목별 주요 평가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환경부, 2016). 그래서 해당 유형의 표준 평가들을 전국 어느 사업, 계획이나 적용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환경부가 제공한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을 기준으로 모든 평가대상 계획 및 사업이 동일하게 평가에 임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자연 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등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판단해야 할 평가항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별 표준 평가항목을 통해 해당 사업의 올바른

7)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접속일 2020.6.3.)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유형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표준 평가항목은 <표 2-6>과 같다.

<표 2-6> 환경영향평가 평가유형별 세부 표준 평가항목의 예

구분	세부 평가항목	
전략 환경 영향평가	정책 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① 국가환경정책 ②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①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②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① 공간계획의 적정성 ②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③ 환경용량의 지속성
	개발 기본 계획	1. 계획 적정성: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②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③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④ 수환경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① 환경기준 부합성 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③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환경 영향평가	1. 자연생태환경 분야: ① 동·식물상 ② 자연환경자산 2. 대기환경 분야: ① 기상 ② 대기질 ③ 악취 ④ 온실가스 3. 수환경 분야: ① 수질(지표·지하) ② 수리·수문 ③ 해양환경 4. 토지환경 분야: ① 토지이용 ② 토양 ③ 지형·지질 5. 생활환경 분야: ① 친환경적 자원순환 ② 소음진동 ③ 위락·경관 ④ 위생·공중보건 ⑤ 전파장해 ⑥ 일조장해 6.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① 인구 ② 주거(이주 포함) ③ 산업	

자료: 환경부(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환경영향평가제도」, p.64.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도 표준평가지침을 통해 평가대상별(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사업 별) 표준 평가 개요, 대상선정, 점검내용, 추진체계, 평가서 작성 요령, 평가절차, 평가지표, 평가서 서식에 관한 표준 평가틀이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법령, 사업, 계획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틀을 통해 평가제도의 확장성이 제고되었다<sup>8)</sup>.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대상별 평가항목 및 지표의 표준 체계는 <표 2-7>과 같다.

8) 성별영향평가 김들순 센터장과의 자문회의(2020.6.22.)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2-7〉 성별영향평가 대상별 표준 평가항목 및 지표의 예

평가대상	표준 평가항목 및 지표
법령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I. 성별 특성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III.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당연직 제외)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IV. 성별 통계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계획	I.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I.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사업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정부 홍보사업	- 등장인물의 구성 시 남녀 비율, 연령 구성의 적절성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의 배제 여부 -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무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 배제 여부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배제 여부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 성별영향평가 지침」, pp.22, 37, 51, 62를 바탕으로 재구성

고용영향평가도 유형별 표준 평가틀이 존재한다. 특별히,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사업 대상별로 표준 평가항목인 재정지출 고용효과와 추가고용효과를 측정하는 산출식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 고용효과는 크게 인건비 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인 인건비 고용효과, 사업비 지출로 인해 제품·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인 사업비 고용효과, 이 두 가지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추가고용효과는 인건비와 사업비 고용효과 외에 재정투입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말하는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일자리 관련 R&D 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결과로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고용 효과를 산출하여 평가하며, 일자리 관련 SOC 사업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시설물 완성 이후 운영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이와 같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사업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량적 평가도구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영향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고, 평가결과 또한 숫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평가결과 및 영향의 차이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재정지원 고용영향평가의 사업대상별 고용효과 표준 산출 산식의 예는 <표 2-8>과 같다.

<표 2-8> 재정지원 고용영향평가: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표준 산출 산식의 예

사업유형		표준 산출 산식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 사업비 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고용유발계수 (또는 지출내역별 고용유발계수) ※ (용자사업)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 정부 융자기여율
	직접일자리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추가고용효과 = 훈련인원 × 수료율 × 취업률 × 1년 고용유지율 × 추가고용기여율
	고용서비스 사업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추가고용효과 = 구직등록자수(사업참여인원) × 취업성공률 × 1년 고용유지율 ×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추가고용효과 = 지원대상 인원 ×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 추가고용기여율
창업지원사업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추가고용효과 = 지원업체 수 × 창업기업당 추가고용기여율	
문화·예술, 보건·복지, 농업·농촌		(공통)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고용효과 + 사업비 고용효과

자료: 고용노동부(2020), 「20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p.24.

이상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특징을 <표 2-9>로 정리한다.

<표 2-9> 타 분야 영향평가 평가 수행의 특징

종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평가유형의 구분	평가시행 목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대상의 성격
평가유형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고용영향평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유형 및 평가대상별 표준 평가틀 유무 여부	○ (평가유형 및 대상별 세부 표준 평가항목)	○ (평가대상별 표준 평가지표)	○ (평가 표준 항목 및 고용효과 산출을 위한 표준 산출식)

## 2. 조직 관리

### 가. 중앙행정기관 내 평가 담당 조직 체계

타 영향평가의 중앙행정기관 평가 담당 조직 체계를 볼 때,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는 기관 내 별도의 영향평가 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에 환경영향평가과가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총 11명의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부서의 구조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분야인 도시개발, 산업단지, 철도건설, 도로, 항만, 해양매립, 국방, 에너지사업 등으로 나뉘고 분야별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타 행정 등의 업무가 배정되어 있다.<sup>9)</sup>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에 성별영향평가과가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총 9명의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부서의 구조는 크게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외 여성친화도시지정사업/성인지, 성별영향평가 교육, 종합분석 보고서,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평등지수 관리 등의 업무가 배정되어 있다.<sup>10)</sup>

9)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 접속일 2020.6.24.)

1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 접속일 2020.6.24.)

고용영향평가는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실제 업무 총괄 및 책임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내 담당부서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을 것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에 고용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1명 배치하고 있다.<sup>11)</sup>

〈표 2-10〉 타 영향평가의 중앙행정부처 및 담당 부서 현황

종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내 담당부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영향평가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
담당부서인원	11명	9명	1명
부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분야 (도시개발, 산업단지, 철도건설, 도로, 항만, 해양매립, 국방, 에너지 사업) 담당</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li> <li>• 기타 행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li> <li>• 특정성별영향평가</li> <li>• 여성친화도시지정사업/성인지</li> <li>• 성별영향평가교육</li> <li>• 종합분석 보고서</li> <li>• 성인지예결산제도</li> <li>• 성평등지수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기관의 평가업무 총괄</li> </ul>

## 나.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능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타 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도 다양한 명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는 전문기관의 수행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개발·작성·보완, ②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③ 제70조제3항(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이상 법 조문에서 명시한 전문기관 수행사항은 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지표 연구 및 개발, 평가도구의 개발, 정보지원

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agency/org/ministry/list.do>, 접속일 2020.6.25.)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전담기관인 성별영향평가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학교 및 부설 연구기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현재 성별영향평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성별영향평가 평가기관의 기능과 업무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제시되어 있는데 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②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③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 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평가전담기관인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이다. 이 후 대행기관의 명칭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변경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총괄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 내 고용영향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센터의 대표 업무를 평가기획, 정책평가, 재정사업평가로 명시하고 있다.

〈표 2-11〉 타 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 지정 및 기능

종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법 상 평가전담기관 지정	○	○	○
법 상 평가전담기관 명칭	전문기관	평가기관	대행기관
평가전담기관 지정 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법 상 평가전담기관 기능 명시	○	○	X
평가전담기관의 공식적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 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li> <li>-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li> <li>-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li> <li>-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li> <li>-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 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li> <li>-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획</li> <li>- 정책평가</li> <li>- 재정사업평가</li> </ul>

#### 다. 평가전담기관 내 평가전담조직 설치, 구성 및 기능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평가전담조직인 환경평가본부를 설치하고 하위 조직으로 국토정책평가실, 공공인프라평가실, 자원에너지평가실을 나누어 환경영향평가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를 본부 내에 설치하여 평가 분야별, 과정별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sup>12)</sup> 현재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환경평가본부 전체 평가전담인력은 초빙인력을 제외하고 총 50명이다.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은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2에 의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

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ei.re.kr/menu.es?mid=a10402030000>, 접속일 2020.6. 24.)

원은 2006년부터 원내 공식적인 평가전담조직인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였고 이후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통계센터 등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센터들의 추가 설립을 통해 평가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2012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現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의 성별영향평가를 관리·운영·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광역시·도 단위에 16개의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별도 설립하여 성별영향평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의 평가 전담인력은 총 8명이며, 16개의 각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는 평균 2-3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중앙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은 크게는 전국 광역 시·도 단위로 설립된 16개의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그 외 전반적인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개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의 이행점검(모니터링), 미흡사례에 대한 컨설팅,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개선·개발 등이 있다.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평가 운영, 상담·자문,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안 도출,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정책 선정 및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 강화, 지역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고용영향평가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노동연구원 내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평가기획팀, 정책평가팀, 재정사업평가팀으로 구분, 초빙연구원을 제외한 총 11명의 전담 연구진을 배치하였다. 고용영향평가센터가 타 분야 평가전담기관들과 다른 점은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이다. 고용영향평가센터는 매년 고용정책 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평가대상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을 연구책임으로 하여 각 대상을 직접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평가 수행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신하여 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보장된다.

〈표 2-12〉 타 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 운영 체계

종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평가전담조직 (실, 센터) 구성	1본부 3실 체계 전담인원 총 50명	중앙영향평가센터: 전담인원 8명 지역영향평가센터(16개): 전담인원 각 2~3명	1본부 3팀 체계 전담인원 총 11명
평가전담조직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지표 개발·작성·보완</li> <li>- 평가 및 예측기법 개발</li> <li>- 정보지원시스템 운영</li> </ul>	(중앙영향평가센터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평가센터 총괄 지원</li> <li>- 대상사업 발굴</li> <li>- 전문가 심층 분석 평가</li> <li>-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총괄지원</li> <li>- 평가지표, 분석기법, 운영, DB 구축 및 관리 등 제도개선 지원</li> <li>-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li> <li>- 홍보 전략 개발 지원</li> <li>- 워크숍 및 포럼 개최</li> <li>-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사업 기획 및 조정</li> <li>-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li> <li>- 법령 고용영향평가 수행</li> <li>- 관련 연구 및 사업</li> <li>- 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사업 운영, 연구품질 관리, 결과 모니터링</li> <li>- 정부 재정사업 고용효과 산출 사업 운영</li> <li>- 산출식 및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li> <li>- 정부 재정사업 고용친화적 예산 수립 컨설팅</li> </ul>
평가전담기관 직접 평가수행	X	△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 3. 법·제도

#### 가. 법률 구성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의 관련 법 조항의 구성 및 내용은 문화영향평가에 비해 구체적이고, 평가 수행의 전반적인 절차 및 평가 조직의 지정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단독 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은 총 9장 75조의 법률 체계를 갖는 만큼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법적 근거, 내용이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은 일반적인 법의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

가대상 지역의 광범위한 정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 및 평가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들, 예를 들어 평가대상,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평가서의 작성, 검토,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그리고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각 유형별 평가대상의 선정부터 평가 결과의 협의 및 통보, 이행 관리 등의 절차적 순서에 적용할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5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6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이행 사항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8장 보칙, 그리고 제9장 평가 결과 불이행에 따른 벌칙의 법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영향평가 관련 단독 법인만큼 수많은 개정의 절차를 걸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한 사례이다. 최근 2020년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구비해야 할 장비 제외 규정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개발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3)</sup>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2011년 단독 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거쳐 평가명 자체의 대중화, 단순화를 위해 2018년 법명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효력을 재정비하였다(여성가족부, 2020).<sup>14)</sup> 「성별영향평가법」은 총 3장 18조의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제1장 총칙은 일반적인 법의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

13) 이뉴스투데이(2020. 5. 4)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관계법령 개정”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70>, 접속일 2020.6.22.)  
 14) 성별영향평가 김둘순 센터장과의 자문회의(2020.6.22.)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대상, 평가의 고려 사항, 평가의 시기, 평가서의 작성,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 유형 중 하나인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제3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로 중앙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방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 자문,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평가 운영에 필요한 추진 및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성별영향평가법」 조항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규정 내용 또한 좀 더 포괄적인 편이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의 세부적인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대상 선정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고용영향평가는 단독 법에 의해 운용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와는 달리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된 평가다. 이는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평가란 점에서 공통적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내 총 8개의 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22~23조에는 고용영향평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은 평가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2항은 평가대상, 제3항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4항은 평가결과 공개, 제5항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및 개선 권고, 제6항은 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및 결과 통보, 제7항은 제 2,5,6항에 대한 대통령령 지정, 그리고 제8항은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고용영향평가대상 정책 선정 및 고려사항, 제22조의2는 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2조의3은 정책제언 및 개선 권고, 제23조는 고용영향평가의 대행기관 지정 및 고시를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별도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제13조의3은 고용영향평가 유형 중 하나인 재정

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성별영향평가법」과 비교해볼 때, 평가 대상 및 선정 기준, 평가 결과에 따른 제언 및 개선 권고, 평가업무 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내용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으나, 평가 절차에 따라 각 시행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이를 볼 때, 단독 법을 갖춘 영향평가의 법률 체계와 기본법에 속하여 운용되는 영향평가의 법률 체계가 평가 수행 및 절차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명시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3개의 타 분야 영향평가의 법률 구성 및 내용을 법조 목록에 따라 <표 2-13>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표 2-13> 타 영향평가의 법률 체계

법	단독 법 보유		기본법에 의거
종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법조 목록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p> <p><b>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b>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제11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대상제외, 대상 계획의 결정 절차,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제12조~제15조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의견 재수렴,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평가</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b>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2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p> <p><b>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b>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p>	<p><b>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b> 제13조 고용영향평가 제13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제13조의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p> <p><b>[시행령]</b> 제22조 고용영향평가대상 정책 등 제22조의2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제22조의3 정책제언 및 개선 권고 제23조 고용영향평가의 대행</p>

법	단독 법 보유		기본법에 의거
종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p>서의 검토, 협의 내용의 통보 기간, 협의 내용의 이행, 재협의, 변경 협의)</p> <p><b>제3장 환경영향평가</b> (제1절~제3절은전략환경영향평가 유사함)</p> <p>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제35조~제41조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조치명령, 과징금, 재평가)</p> <p>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p> <p><b>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b> (제43조~제4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평가서 검토, 협의 내용의 반영,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 내용의 이행의 관리·감독)</p> <p><b>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b> (제50조~제52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p> <p><b>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b> (제53조~6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결격사유, 평가업자의 준수사항, 권리·의무의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록의 취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보고·조사, 대행 실적의 보고, 대행 비용의 산정 기준)</p> <p><b>제6장의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b> (제62조의2~제62조의4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인정, 인정취소)</p>	<p>제15조 성별영향평가의 교육</p> <p>제16조 성별영향평가 자문</p> <p>제17조 성별영향평가기관</p> <p>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p>	

법	단독 법 보유		기본법에 의거
종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b>제7장 환경영향평가사</b> (제63조~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취소 등)  <b>제8장 보칙</b> (제66조~제72조 평가서등의 공개,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청문, 전문 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b>제9장 벌칙</b> (제73조~제76조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나. 평가 의무 대상, 사후 조사 및 이행 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 구속력**

타 분야 영향평가의 법률 체계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주목해볼 것은 각 법 조항에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법적 강제력을 유지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이행 의무를 더하여 영향평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각 유형별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으로 총 18개의 특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 사후 이행에 있어, 각 유형별 평가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사업이 협의의 내용을 향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법에 담고 있다. 그리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취해질 명령,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및 내용도 법에 포함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크게는 제 개정을 추진 중인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처럼 평가대상으로서의 특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

령에 의거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은 정책 소관기관이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대상에 대해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평가 사후 결과에 관해서, 「고용정책 기본법」은 해당 정책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구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소관기관으로 하여금 본 영향평가를 숙고하여 계획, 정책, 사업을 수정·수행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발휘될 수 있는 법 조항 체계는 피평가기관 및 관련자들에게 각 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줌과 동시에 평가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평가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앞서 살펴본 문화영향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를 신설하여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별 평가의 정합성이 부합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표준 조례안이 상이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있어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안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의무대상, 대상 선정기준, 평가 절차별 규칙, 평가 사후에 대한 조치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서로 다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지적하였다.

타 영향평가의 경우, 관련법 및 시행령에서 이미 평가 의무 대상 및 평가 수행 절차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놓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관련 조례 신설을 돕는 표준 조례안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예로, 환경부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규범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자

표준 조례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가 제공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와의 협의 아래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다(이상열·박종웅·노수경, 2018). 성별영향평가도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평가대행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당해의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조례 또한 신설할 필요가 없음으로 판단된다.

### 제3절 소결

이상 문화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들 간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들을 정리한 결과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타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간 비교

구분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고용영향평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
평가유형의 구분	평가시행 목적	평가서 작성주체	평가대상의 성격	평가심도
평가유형별 표준평가들	○	○	○	△ (유형 및 평가들 매년 변경)
대상사업별 표준평가항목 및 지표의 구분	○	○	○	X
정량적 평가도구	○	X	○	X
표준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사업별 표준 지침)	○ (유형별, 대상별 표준지침)	○ (유형별 표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 (지침은 매년 발간하나 그 내용이 매년 조금씩 변경됨)
중양행정기관 내 평가전담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수	○ 11명	○ 9명	○ 1명	X 1명
법 상 평가전담기관 지위	전문기관	평가기관	대행기관	지원기관
평가전담기관 내 평가전담조직 보유	○	○	○	X
평가전담조직 내 인력 수(정규직)	50명	중앙: 8명 16개 지역: 약 2~3명	11명	6명

구분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법·제도	평가관련 단독법 보유	○	○	X	X
	평가(의무)대상 지정	○	△	△ (지원예산액에 따라 권고)	X
	평가 수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 명시	유형별 매우 구체적	유형별, 중앙-지역별 구체적	다소 구체적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결과 이행, 개선에 대한 법적 구속력	○	○	○	X
	법 상 평가전담기관 기능 명시	○	○	X	X
	표준 조례안 마련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X

위 특징들을 비교 분석함을 토대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영향평가의 확장성은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제도의 정합성을 대신할 표준 평가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는 모두 평가유형에 따른 표준 평가틀을 정립한 상태이며 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항목 및 지표 등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평가유형별 표준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마련됐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어떤 계획, 정책, 사업에도 표준 평가틀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평가유형과 평가 수행 체계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고 그에 따라 평가지침 또한 매년 변경되었기 때문에 타 영향평가와 같은 표준 평가 가이드라인, 매뉴얼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대상 사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평가대상이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받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의 특성상 정성적인 방식에만 의존해 평가해왔던 문화영향평가의 현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의 정량적 표준 평가 도구와 같은 방식도 제도의 정합성을 대변할 수 있는 표준 평가틀로 요구될 수 있다.

둘째,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전담기관으로서 지원기관을 법정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평가전담기관의 기능을 뒷받침할 조직 관리 체계가 매우 부실하다. 타 영향평가들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총괄하는 관련 부처에 평가전담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적정 수준 배치하고, 평가전담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평가 업무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내에 공식적인 평가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최소 8인에서 많게는 50인까지 배치하여 평가 업무를 지원, 관리하는 등 평가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수행 전반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타 영향평가처럼 관련법에서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관련 부처를 비롯하여 평가전담기관 내에 독립적인 평가전담 부서 및 조직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담인력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체계 때문에 실제 평가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지원기관의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셋째,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평가 관리 및 운영 체계의 실효성, 효율성을 담보하기에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를 위한 단독 법을 통해 유형별 평가 의무 대상 및 평가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또한 일정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문화영향평가와 같이 기본법에 의거해 수행되는 고용영향평가도 평가 대상, 평가 수행에 대한 법적 내용이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타 영향평가 관련법들은 모두 평가 사후의 이행, 개선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함을 통해 평가결과 및 환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의무대상, 대상 선정기준, 평가 환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행 절차와 평가 관련 조직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 법 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한 상태이다. 나아가 영향평가의 확산 및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표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는 타 영향평가에 비해, 문화영향평가는 지역으로의 제도 확산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지 못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들마다 상이한 방식의 평가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평가의 통일성, 정합성을 흐트러뜨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화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자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제3장

## 관계자 의견 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

## 1.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와의 정책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 조사는 크게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인터뷰(이하 FGI)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총 100명으로,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연구자 24명, 평가단으로 참여했던 평가자 25명, 평가 관련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전문가 12명,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 11명,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5명, 피평가자집단인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인 공무원 17명, 기타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전문 분야 종사 기간은 10~15년 미만 및 20년 이상이 각각 25명, 5년 미만 18명, 5~10년 미만 19명, 15년~20년 미만 13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에 대한 특성은 <표 3-1>과 같다.

FGI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문화영향평가 발전 방향 정립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둔다. FGI 대상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이며 둘째,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및 평가, 자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고 문화영향평가 별도 조례를 제정한 혹은 제정을 계획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및 지역 대학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FGI 수행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의에 문화영향평가 담당공무원 4명, FGI 이후 추가적인 서면을 통해 FGI 논의 내용을 검토한 자문에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내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자 13명이 참여하였다.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
		n=100, 단위: %
전문 분야 종사기간	5년 미만	18
	5년 이상 10년 미만	19
	10년 이상 15년 미만	25
	15년 이상 20년 미만	13
	20년 이상	25
문화영향평가 참여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기타	6

## 2. 조사 내용 및 방법

먼저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둘째,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개선방안, 셋째,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개선방안, 넷째,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영향평가 발전 방향을 묻는 종합의견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주요 문항은 총 14개이며 응답 내용에 따라 5개의 추가 문항이 더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단일 및 복수 응답 문항(기타 항목 포함), 척도, 우선순위 선택, 주관식 등 다양한 응답 방식으로 구성되었다(〈표 3-2〉 참고).

또한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평가 수행 개선방안 중 문화영향평가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기관 인센티브 방안, 문화영향평가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문항은 2018, 2019년도에 시행한 문화영향평가 정책연구 및 한승준 외(2017)의 문화영향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 시행되었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조사 내용 및 형태가 본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pm 5.86\%$ p이다.

〈표 3-2〉 설문조사 내용 및 응답 방식

주제 구분	조사 내용	응답 방식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1.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7점 척도
	2.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 기여도 평가	5점 척도
	2-1. 문화영향평가의 기여도 미진 이유	우선 순위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수행 개선방안	3. 문화영향평가의 미래 기여도 평가	5점 척도
	4.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틀 필요성	5점 척도
	4-1.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복수 응답
	5.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복수 응답
	6. 문화영향평가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복수 응답
	7. 평가지표별 영향 측정 위한 정량적 평가도구 필요성	단일 응답
	7-1.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한 평가지표	복수 응답
	7-2. 평가지표 및 정량적 평가도구 제안	주관식
8.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기관 인센티브 방안	단일 응답	
문화영향평가의 조직관리 개선방안	9. 문화영향평가 개선 필요 사항	우선 순위
	10. 평가전담기관 기능 관련 강화해야 할 점	우선 순위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방안	11.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 명시 필요 항목	복수 응답
	12. 향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별도 법제정/시행령 개정 필요성	단일 응답
	12-1. 향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별도 법제정/시행령 개정 시 필요 항목	복수 응답
문화영향평가의 발전 방향	13.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시 필요성	단일 응답
	14.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시급/중요한 사항	우선 순위

FGI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FGI는 주로 설문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의견의 공유되었다. 세부적인 논의 내용은 참석자가 속한 각 지역별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 및 애로 사항, 평가 수행에 있어 표준 평가틀의 필요 여부와 바람직한 수행 방식, 평가 방식별 인센티브 방안, 조직 관리에 있어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도에 있어 문화영향평가 표준 조례안 마련 등이다.

FGI를 실시하기 전 진행한 사전회의는 전화 및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FGI에서 논의하고자 한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평가대상 선정 등 전반적인 문화영향평가 실태에 대해 사전 점검하였다. FGI를 실시한 후 진행한 추가 서면자문은 FGI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운영 외에 문화영향평가 인센티브, 의무 평가대상의 법적 규정을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3-3〉 표적집단인터뷰(FGI) 개요

구분	FGI 이전 사전회의	FGI	FGI 이후 추가 서면자문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문화영향평가 담당공무원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영향평가 담당공무원 2명</li> <li>-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3명</li> <li>- 지역 대학 교수 1명</li> </ul>	광역시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내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자 13명
조사방법	유선(전화) 및 온라인 자문회의	온라인 자문회의	서면 자문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li> <li>- 평가 담당자 애로사항</li> <li>- 평가대상 및 대상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한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적 개선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운영</li> <li>-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li> <li>- 의무 평가대상의 법적 규정</li> </ul>
조사기간	2020. 8. 20.~8. 26.	2020. 8. 27.	2020. 9. 7.~ 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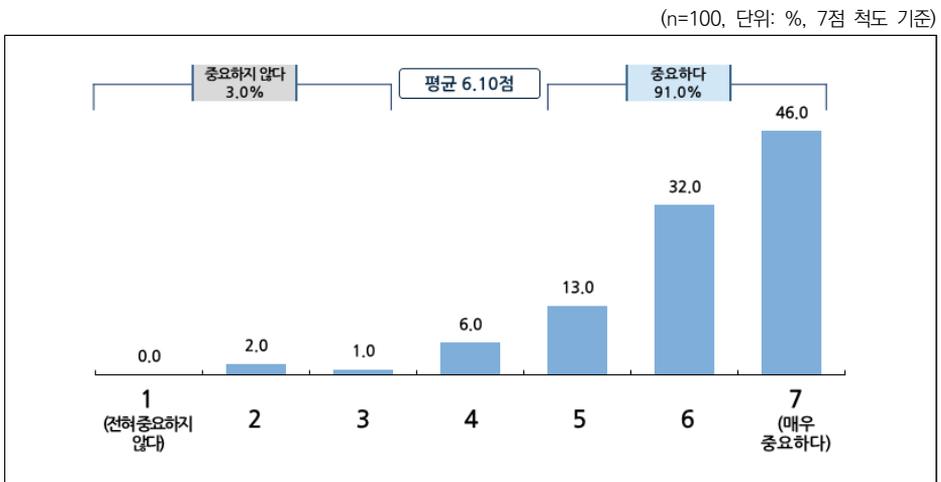
## 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 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 가.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먼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7점 척도 중 가장 높은 '7. 매우 중요하다'로 답하였으며, 전체 91%가 5~7점 정도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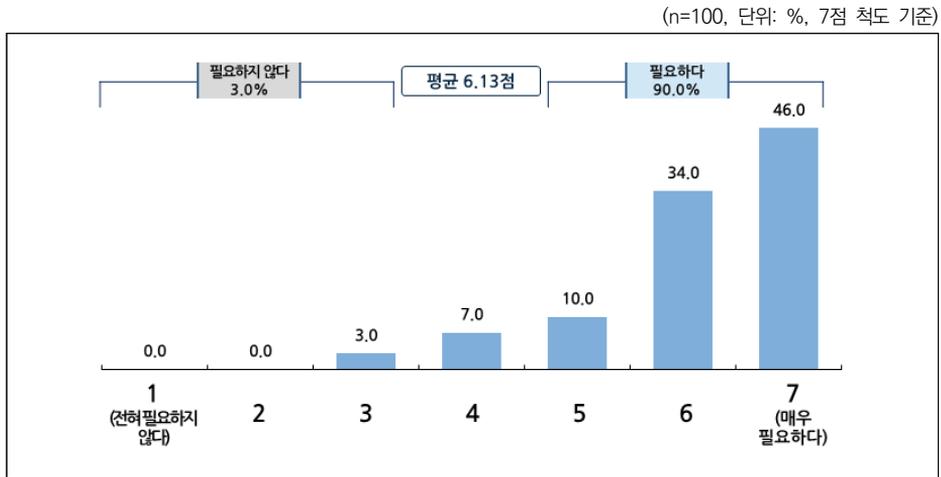
[그림 3-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7점 척도 중 가장 높은 '7. 매우 중요하다'로 답하였으며, 전체 90%가 5~7점 정도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응답자들은 문화영향평가가 정책 계획 및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참여경험에 따라 나누어볼 때, 평가수행기관 연구진, 평가단,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 등 평가자 집단이 인식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피평가자집단인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들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영향평가 자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집단과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경험자 집단들은 모두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표 3-4>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n=100, 단위: %, 7점 척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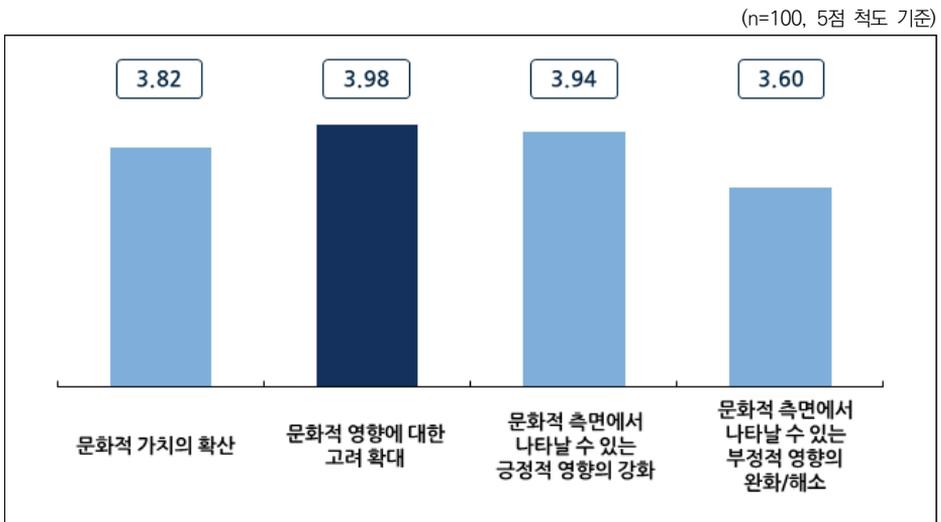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n)	중요성				필요성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평균	필요하지 않다	보통	필요하다	평균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4.2	0.0	95.8	6.29	4.2	0.0	95.8	6.29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4.0	0.0	96.0	6.16	4.0	4.0	92.0	6.2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0.0	16.7	83.3	5.75	0.0	25.0	75.0	5.83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0.0	9.1	90.9	6.27	0.0	9.1	90.9	6.18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0.0	20.0	80.0	5.00	20.0	0.0	80.0	4.8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5.9	11.8	82.4	5.94	0.0	11.8	88.2	6.12
	기타	6	0.0	0.0	100.0	6.83	0.0	0.0	100.0	6.83

## 나.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 기여도 평가

문화영향평가가 2015년 시범평가를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 가치의 확산’,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 확대’,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강화’,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해소’ 등 총 네 개의 항목별로 물었다. 그 결과, 5점 척도 기준으로 각 항목별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3.60~3.98점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게 기여했다고 생각한 항목은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 확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정책이 계획, 시행될 때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의 형성에 문화영향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기여를 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2018년에 시행한 동일 질문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볼 때, 당시 응답자들은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평균 3.84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높게 기여 항목 역시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 확대’, 가장 낮게 기여한 항목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해소’로 현재와 동일하게 나왔다. 이를 볼 때,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의 완화/해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대 요소들을 평가 체계에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림 3-3]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 기여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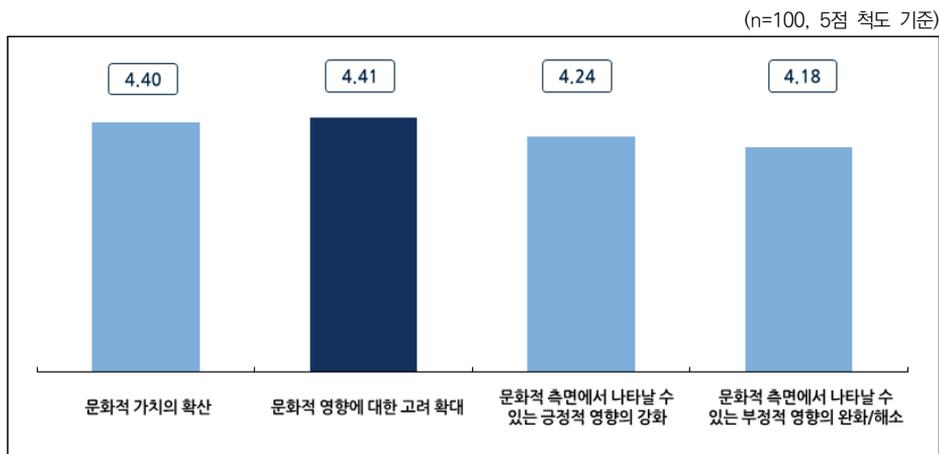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의 기여도가 미진하다고 답한 응답자 9명을 대상으로 응답 이유에 대해 항목별 1, 2순위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문화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이 불명확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평가 수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근거가 미약함’, ‘문화영향평가를 관리·지원하는 행정 조직의 전문성, 체계성, 효율성 제고 노력이 미흡함’, ‘평가대상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계획 수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 등을 문화영향평가 기여도 미진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결과를 볼 때, 문화영향평가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를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서 개선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게 된다.

#### 다. 문화영향평가의 미래 기여도 평가

문화영향평가가 향후 미치게 될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2018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4.18~4.41점 수준의 높은 기여도를 예측하고 있었다. 특히 문화영향평가의 과거~현재의 기여도보다 미래 기여도가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응답자들이 문화영향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향후 나타날게 될 긍정적인 기여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높은 기여를 기대하는 항목은 과거/현재의 기여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 확대’였으며 ‘문화적 가치의 확산’도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긍정적 기여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3-4] 문화영향평가의 미래 기여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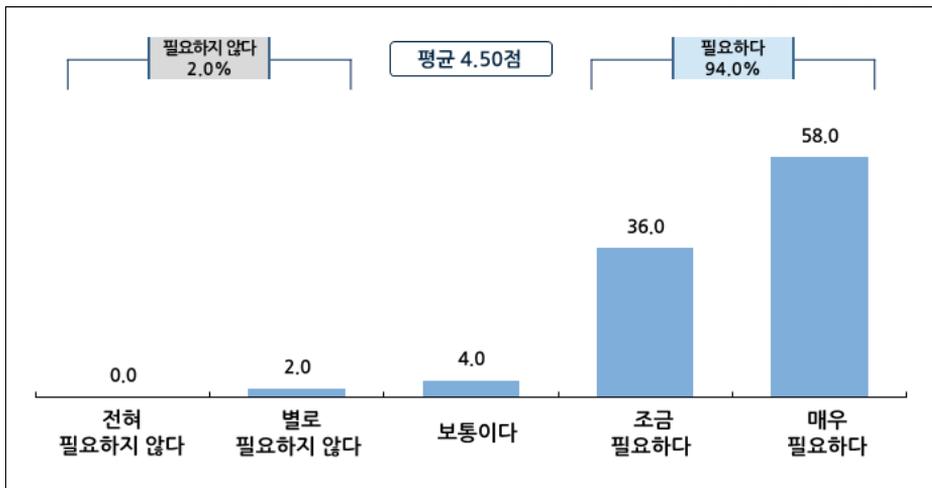
## 2.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개선방안

### 가.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의 필요성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가대상 사업별로 각기 다른 평가 유형, 평가 수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정 수준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의 필요성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4%는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 중 58%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를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피평가자 집단인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의 표준 평가를 필요도가 평균 4.94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의 필요성

(n=100, 단위 %, 5점 척도 기준)



〈표 3-5〉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의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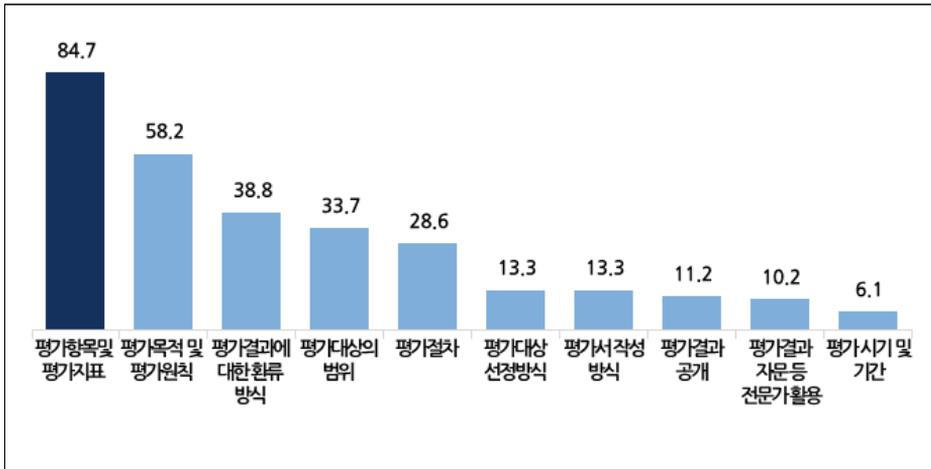
(n=100, 단위 %)

구분		응답자 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5점척도)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0.0	8.3	0.0	41.7	50.0	4.33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0.0	0.0	4.0	52.0	44.0	4.4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0.0	0.0	8.3	41.7	50.0	4.42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0.0	0.0	9.1	36.4	54.5	4.45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0.0	0.0	20.0	40.0	40.0	4.2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0.0	0.0	0.0	5.9	94.1	4.94
	기타	6	0.0	0.0	0.0	16.7	83.3	4.83

추가 문항으로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답한 98명에게 표준 평가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 11개(기타 포함) 항목들 중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복수 응답 결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가 84.7%의 가장 높은 비율로 표준 평가들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평가목적 및 평가원칙’이 58.2%,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방식’이 38.8%, ‘평가대상의 범위’가 33.7%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목적 및 평가원칙’,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방식’은 평가자 집단으로서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평가 피드백 과정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평가단, 자문위원, 심사위원과 더불어 문화영향평가 연구 수행 경험자들에 의해 높게 나타난 반면, ‘평가대상의 범위’는 실제 문화영향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할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선택하였다.

[그림 3-6]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n=98, 단위 %, 복수 응답)



<표 3-6>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n=9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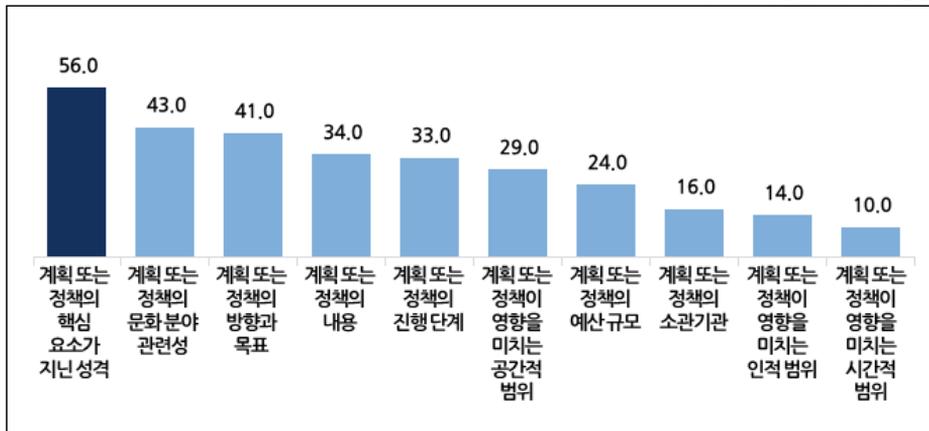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	평가 목적 및 평가 원칙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방식	평가 대상의 범위	평가 절차	평가 대상 선정 방식	평가서 작성 방식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 자문 등 전문가 활용	평가 시기 및 기간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2	100.0	54.5	27.3	36.4	36.4	9.1	18.2	18.2	0.0	0.0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76.0	64.0	48.0	28.0	28.0	12.0	12.0	8.0	12.0	4.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83.3	66.7	50.0	33.3	33.3	25.0	0.0	8.3	0.0	0.0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72.7	72.7	45.5	9.1	36.4	9.1	9.1	27.3	9.1	9.1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80.0	60.0	0.0	40.0	20.0	20.0	20.0	20.0	0.0	4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82.4	41.2	41.2	47.1	11.8	17.6	23.5	0.0	29.4	5.9
	기타	6	100.0	50.0	33.3	50.0	33.3	0.0	0.0	0.0	16.7	16.7

## 나.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유형은 필요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 평가틀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유형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향후 평가유형을 정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세 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복수 응답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계획 또는 정책의 핵심 요소가 지닌 성격’이 56%였으며, 그 다음으로 ‘계획 또는 정책의 문화 분야 관련성’이 43%, ‘계획 또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41%, ‘계획 또는 정책의 내용’이 34%, ‘계획 또는 정책의 진행단계’가 33%이 평가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꼽혔다. 상위 5개 항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응답자들은 문화영향평가유형은 평가를 받아야 할 계획, 또는 정책의 목적, 내용, 사전, 사후와 같은 진행 단계, 문화 관련성 등 계획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평가 유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오히려 계획 또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인적, 시간적 범위, 예산 규모, 소관기관 등 계획 및 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는 평가유형 정립에 큰 고려 사항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n=100, 단위 %, 복수 응답)



평가참여 경험별 집단 차이를 볼 때,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과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들의 경우 ‘계획 또는 정책의 핵심 요소가 지닌 성격’이 평가 유형 정립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들은 ‘계획 또는 정책의 내용’, ‘계획 또는 정책의 진행 단계’ 등 계획 및 정책의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평가자 집단인 평가수행기관 연구진 참여자, 평가단, 자문/심사위원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계획 또는 정책의 문화 분야 관련성’ 인데, 이는 문화와 관련이 있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평가자 집단과 그 외 집단의 견해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문화영향평가 유형 정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n=100, 단위 %)

구분		응답자 수	계획 또는 정책의 핵심 요소가 지닌 성격	계획 또는 정책의 문화 분야 관련성	계획 또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	계획 또는 정책의 내용	계획 또는 정책의 진행 단계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54.2	50.0	41.7	20.8	45.8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48.0	56.0	44.0	44.0	20.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50.0	50.0	41.7	50.0	16.7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72.7	27.3	54.5	18.2	54.5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0.0	20.0	40.0	60.0	8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82.4	35.3	35.3	23.5	17.6
	기타	6	50.0	16.7	16.7	50.0	33.3
구분		응답자 수	계획 또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계획 또는 정책의 예산 규모	계획 또는 정책의 소관기관	계획 또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인적 범위	계획 또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범위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25.0	37.5	4.2	16.7	4.2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36.0	16.0	16.0	12.0	8.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16.7	16.7	41.7	8.3	8.3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36.4	18.2	0.0	0.0	18.2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20.0	0.0	40.0	20.0	2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23.5	29.4	23.5	23.5	5.9
	기타	6	50.0	33.3	0.0	1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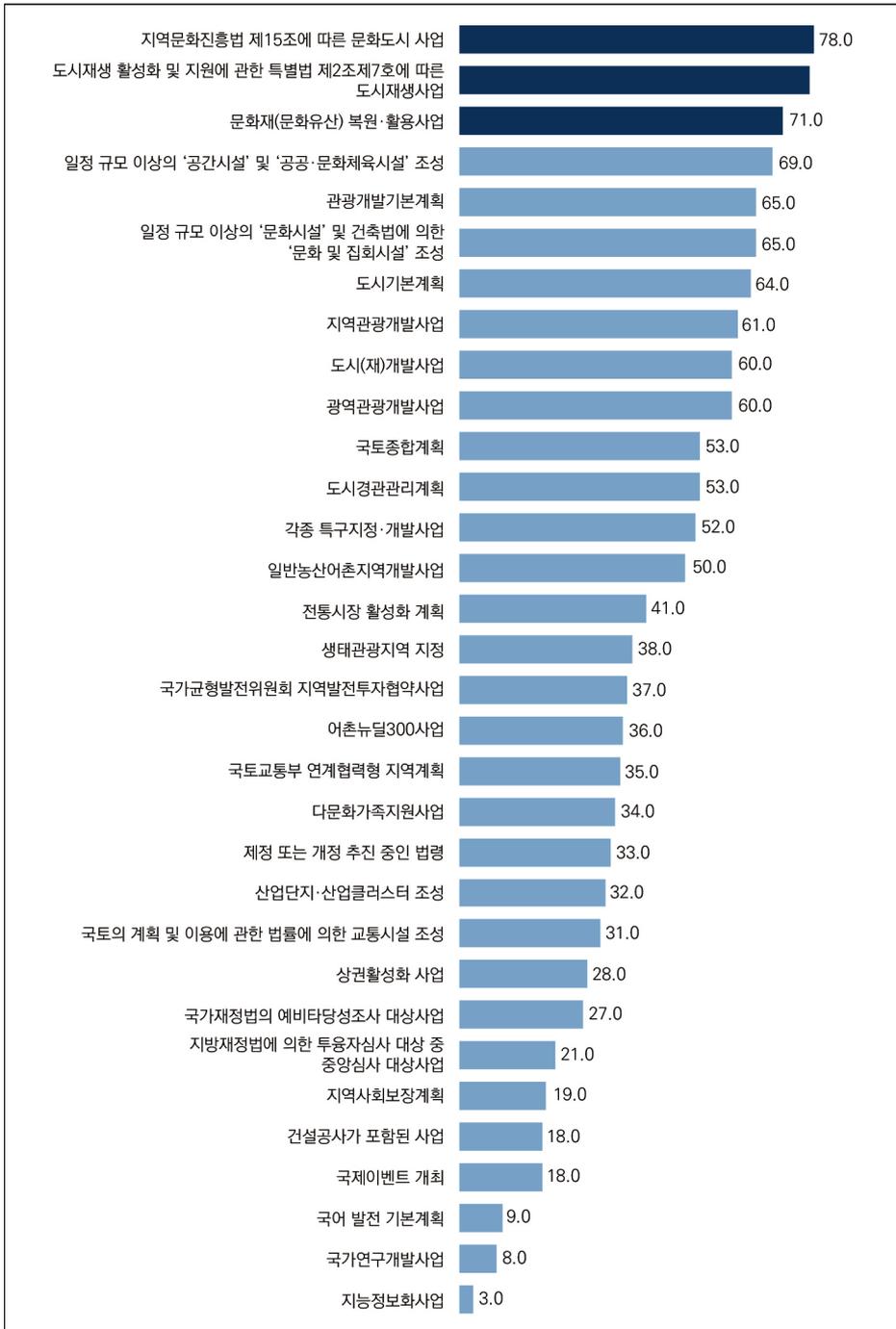
#### 다. 문화영향평가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타 영향평가와 달리 문화영향평가는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 수행의 당위성 또한 결여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 정책연구에서 실시했던 설문 중 평가대상에 포함할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질문의 연속으로써, 응답자들에게 총 32종류의 사업들 가운데 문화영향평가의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복수 응답 결과,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77~78%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재(문화유산) 복원·활용사업이 71% 선택되었다. 그 외 상위 6개의 사업 특성을 볼 때, 모두 문화를 활용한, 혹은 문화가 핵심 요소로 접목된 사업들이 선택되었다. 이 결과는 2019년 유사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띤다. 다만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대부분 문화영향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거나 이해관계에 놓인 자들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의 의무 대상을 문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 외, 다른 집단과 달리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수행 경험자 집단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크다고 응답한 사업으로 각종 특구 지정·개발사업,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시설조성, 상권활성화사업과 같은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뿐만 아니라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중인 법령,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등이 선택되었다. 즉, 문화영향평가의 의무적 대상이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영향을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문화영향평가 의무적 대상이 될 때, 문화영향평가가 갖는 파급력과 영향력, 인식 등이 좀 더 확대·확산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8] 문화영향평가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n=100, 단위 %, 복수 응답)



## 라. 평가지표별 문화적 영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도구의 필요성

현재 정성적 평가도구가 주를 이루는 문화영향평가에서 지표별 문화적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도구의 필요성을 물었다. 응답 결과 73%가 정량적 평가도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이미 정량적 평가도구가 정립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거나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들은 모두 문화영향평가에 있어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3명에게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6개 핵심평가지표 중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한 지표를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하였다. 복수 응답 결과,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은 응답률인 61.6%를 보였으며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적 평가도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그림 3-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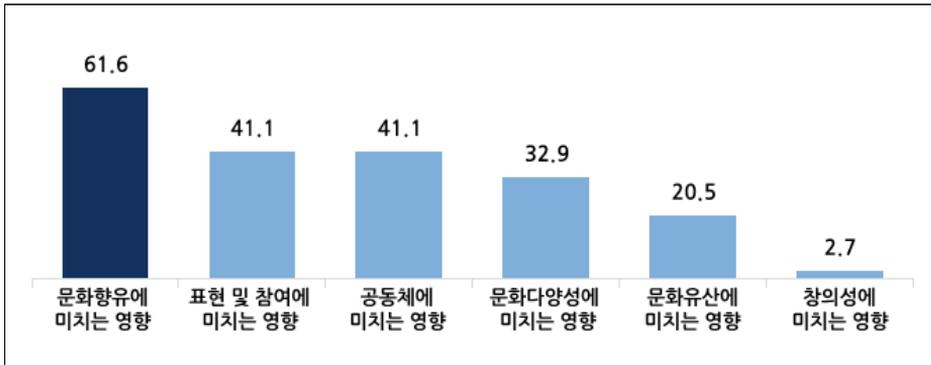
〈표 3-8〉 문화적 영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도구의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n=100, 단위 %)

구분	응답자 수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 없다 (정성적 평가도구 만으로도 충분하다)	
전체	100	73.0	27.0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70.8	29.2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68.0	32.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75.0	25.0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63.6	36.4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100.0	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76.5	23.5
	기타	6	83.3	16.7

[그림 3-9]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한 평가지표

(n=73, 단위 %, 복수 응답)



그 외에도 응답자들이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정량적 평가도구(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 <표 3-9>과 같다. 예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등과 같은 공식 실태조사 자료들을 활용할 방법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주었다.

<표 3-9> 평가지표 및 정량적 평가도구 제안

평가지표	정량적 평가도구 (방법) 제안
현재 평가 지표 범위 내  문화 향유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수실태조사를 문화향유 및 참여 실태조사로 확대, 운영하고 시민의 문화행사 관람, 향유 실태에서 나아가 문화참여 및 표현 관련 지수(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 이후 문화영향평가에서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향유도, 표현 및 참여도에 기여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지역(도시재생 지역)내 도서관, 문화공연장 등의 수 활용
	문화향유는 사업(정책) 대상지 인근의 문화기반시설 수 /공동체는 사업(정책) 관련 민원발생 건수 / 설문조사는 모든 지표에 적용하여 정량화해야 함
	소득, 시간, 이동 함수 활용
	향유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의 규모와 영향 범위 등의 기준을 통한 음영지역 미발생 유도
	현실적으로 주민(대상 범위) 대상 실태/설문조사만 가능할 듯 함
	(가칭)문화생활SOC 등 평가대상 사업으로 인해 확충 혹은 공급되는 물리적 시설 수 및 평균 접근성(거리) 향상 정도 파악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포함된 조사항목인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 참여도 활용	

평가지표	정량적 평가도구 (방법) 제안
	<p>그동안 '참여자 수'를 측정하여 향유권의 증감을 추적해왔다면, 참여자 수 - 참여자 중 재참여자 수 - 재참여자의 지역문화관련 사업 참여 수를 시기별 (혹은 단계별)로 측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p> <p>기존의 문화향수실태조사 지표보다 좀 더 문화영향평가에서 주목하는 세부적인 문화향유권 차원의 지표 체계 필요</p> <p>단적인 예로 설문을 통해서도 표본 중 실제 향유비율 등 일정한 수치를 뽑을 수 있을 것임</p> <p>문화관련 단체 현황 활용</p> <p>총 사업 예산대비 문화향유사업 예산 활용</p>
문화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	생활체육처럼 문화향유공간 접근 시간 활용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p>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등 기존의 정량 지표 관련 내용 활용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 이용률,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율 등)</p> <p>표현 참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틀을 문화영향평가기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p> <p>평가대상 정책과 관련한 회의 및 포럼 등의 개최횟수, 홍보수준(매체종류, 노출빈도 등) 활용</p>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 협력 현황(고유한 지역 축제 유무 및 지역사 회 참석 빈도) 활용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집단별, 하위문화별, 비주류 문화예술 등에 대한 정량지표 제시 및 측정 필요(문광연, 2015 보고서 참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층이 얇아 정량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지수를 문화영향평가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여 장래 공동체 사회발전의 창의적 측면 비교 가능하도록 변형
현재 평가 지표 범위 외	개인의 문화활동 다양성 평가
	기본지표와 개별지표를 사업의 차별성을 평가하는데 반영
	핵심가치 세부 분류를 측정항목 설문형으로 구성
	당해 사업시행 전과 직후를 예측하여 비교
	재정 투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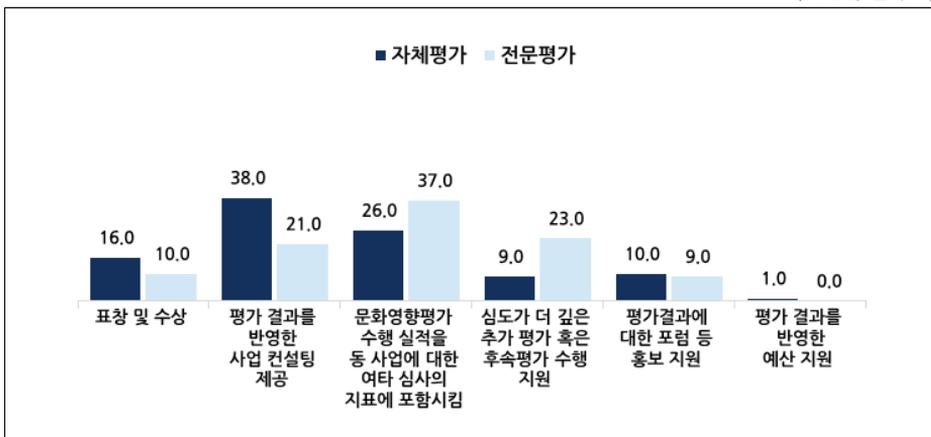
#### 마.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기관 인센티브 방안

문화영향평가의 확산을 위해, 평가대상기관에 제공할 인센티브 방안을 자체평가(사업 소관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평가)와 전문평가(외부의 전문평가수행기관이 평가) 등 평가방식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였다. 응답 결과, 자체평가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컨설팅 제공(38.0%)’이 가장 높은 반면, 전문평가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수행 실적을 동 사업에 대한 여타 심사의 지표에 포함시킴(37.0%)’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 외 ‘심도가 더 깊은 추가평가 혹은 후속평가 수행 지원’ 방안은 전문평가에서의 적절성이 더 높으며(23.0%) 9.0%), ‘표창 및 수상’ 방안은 자체평가에서의 적절성이 더 높았다(16.0%) 10.0%).

특히 자체평가의 경우 실제 평가 수행자라 할 수 있는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들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컨설팅 제공’과 ‘표창 및 수상’ 등을 적절한 인센티브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전문평가의 경우 평가수행기관 연구진들이 ‘문화영향평가 수행 실적을 동 사업에 대한 여타 심사의 지표에 포함시킴’을 적절한 인센티브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국 자체평가 방식은 평가 이후 사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더불어 해당 사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정책 소관기관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평가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평가를 받은 정책 소관기관은 평가 수행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더 심도 깊은 추가평가 지원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기대하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림 3-10]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기관 인센티브 방안

(n=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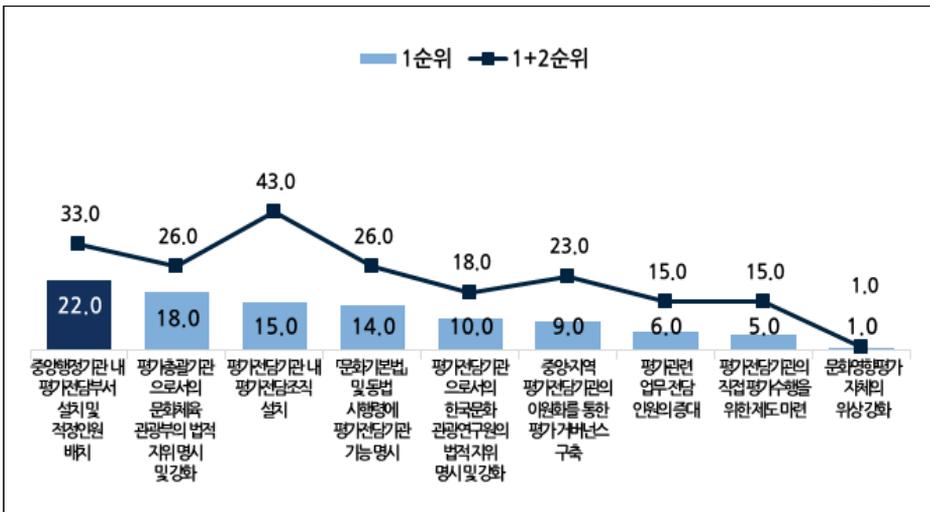
### 3.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개선방안

#### 가.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사항

여기에서는 타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체계를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1, 2순위로 응답하도록 했다. 응답 결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내 평가전담부서 설치 및 적정인원 배치’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2순위를 합친 결과로는 ‘평가전담기관 내 평가전담조직 설치’가 4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즉, 문화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 총괄 기능을 가능케 할 조직 구성을 현실화하고, 현재 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조직을 마련할 것이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자 및 피평가자 집단 모두 ‘중앙행정기관 내 평가전담부서 설치 및 적정인원 배치’를, 문화영향평가 및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들이 ‘평가총괄기관으로서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적 지위 명시 및 강화’ 등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총괄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n=100, 단위 %)



〈표 3-10〉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상위 6개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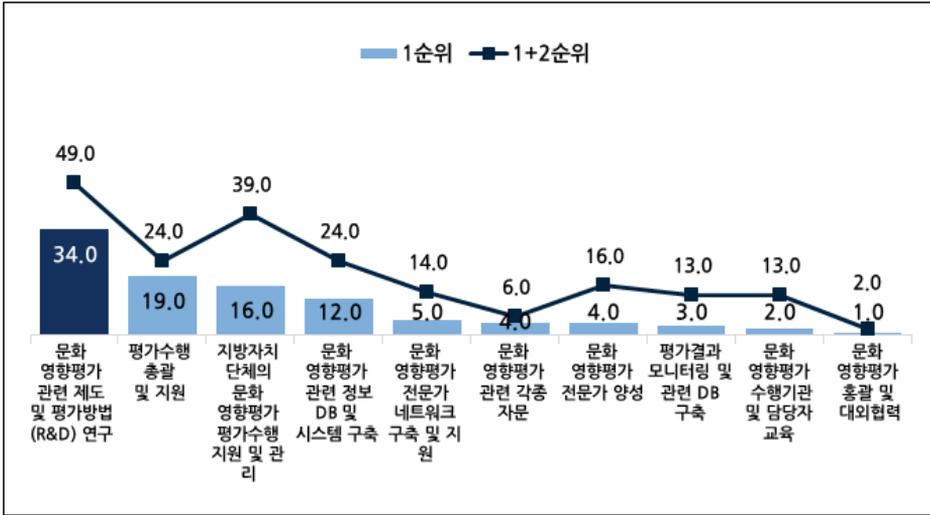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중앙행정 기관 내 평가전담 부서 설치 및 적정 인원 배치	평가 총괄기관 으로서의 문화체육 관광부의 법적 지위 명시 및 강화	평가 전담기관 내 평가 전담조직 설치	문화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평가 전담기관 기능 명시	평가 전담기관 으로서의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의 법적 지위 명시 및 강화	중앙- 지역 평가전담 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평가 거버넌스 구축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25.0	25.0	12.5	8.3	4.2	12.5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28.0	16.0	16.0	16.0	8.0	12.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16.7	0.0	16.7	25.0	33.3	0.0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0.0	36.4	9.1	18.2	9.1	0.0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20.0	20.0	20.0	0.0	20.0	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29.4	5.9	11.8	17.6	5.9	11.8
	기타	6	16.7	33.3	33.3	0.0	0.0	16.7

#### 나.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문화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평가방법(R&D) 연구’가 1순위 34.0%,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응답률 49.0%로 가장 높았다. 이는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직접적인 평가 수행보다는 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평가수행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1, 2순위 응답을 합친 결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지원 및 관리(39.0%)’ ‘평가 수행 총괄 및 지원(24.0%)’, ‘문화영향평가 관련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24.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평가 참여경험별 응답자 집단을 비교해볼 때,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과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경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 지원 및 관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점으로 선택한 것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

(n=100, 단위 %)



<표 3-11>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점(1순위):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n=100, 단위 %)

구분		문화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평가방법 (R&D) 연구	평가수행 총괄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지원 및 관리	문화영향평가 관련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41.7	16.7	8.3	8.3	12.5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40.0	28.0	12.0	8.0	4.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33.3	33.3	16.7	0.0	0.0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8.2	9.1	27.3	27.3	0.0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40.0	20.0	0.0	20.0	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23.5	0.0	29.4	23.5	0.0
	기타	33.3	33.3	16.7	0.0	16.7

구분		문화영향평가 관련 각종 자문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평가결과 모니터링 및 관 련 DB 구축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담당자 교육	문화영향평가 홍보 및 대외협력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0.0	4.2	8.3	0.0	0.0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0.0	4.0	0.0	4.0	0.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8.3	8.3	0.0	0.0	0.0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0.0	9.1	9.1	0.0	0.0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0.0	0.0	0.0	0.0	2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6	0.0	0.0	5.9	0.0
	기타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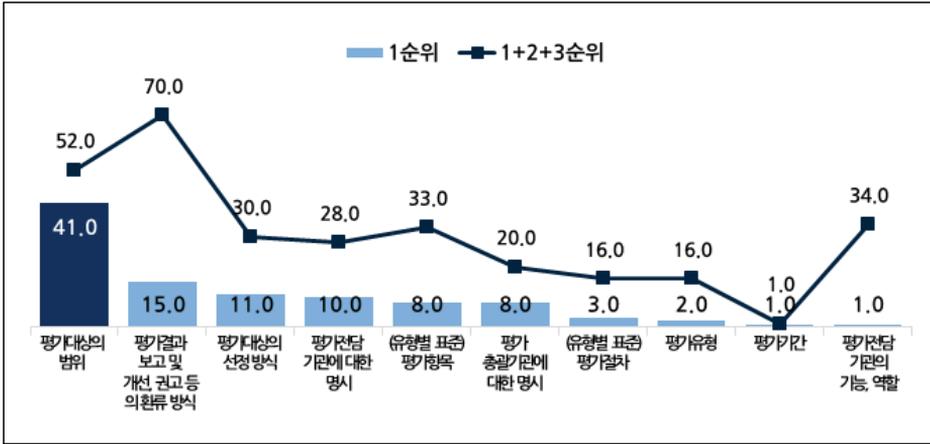
#### 4.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방안

##### 가.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항목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이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래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항목을 3순위로 선택하도록 했다. 응답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평가대상의 범위’가 41.0%로 가장 높았다. 1, 2, 3순위를 모두 응답한 종합 결과를 보면 ‘평가결과보고 및 개선, 권고 등의 환류 방식’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대상의 범위(52.0%)’,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역할(34.0%)’, ‘평가유형별 표준 평가항목(33.0%)’ 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3]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항목

(n=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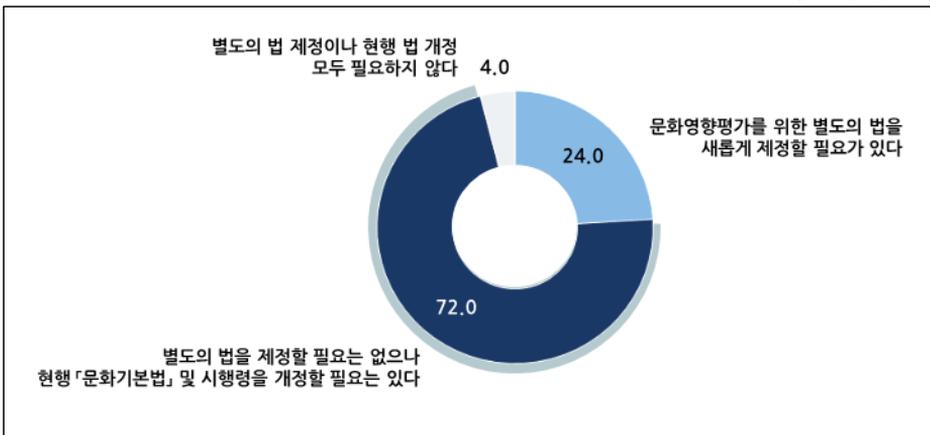


#### 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 필요성

향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 또는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0%, 가칭 「문화영향평가법」과 같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4.0%로 전체 응답자 중 96.0%가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그림 3-14]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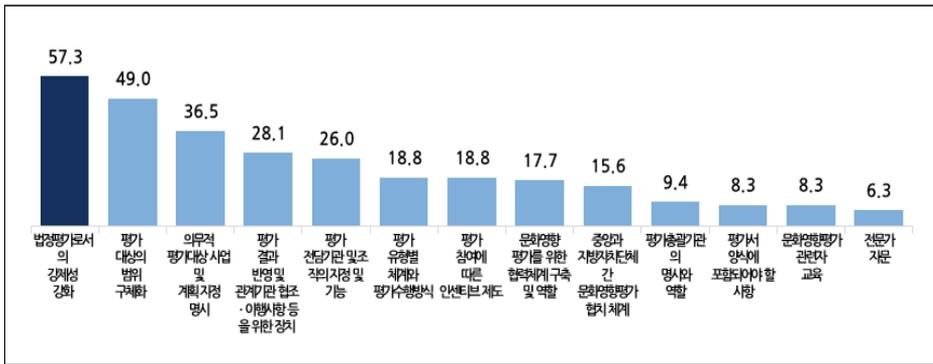
(n=100, 단위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6명을 대상으로 향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물었다. 복수 응답 결과, ‘법정 평가로서의 강제성 강화’가 57.3%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대상의 범위 구체화(49.0%)’, ‘의무적 평가대상 사업 및 계획 지정 명시(36.5%)’, ‘평가결과 반영 및 관계기관 협조·이행사항 등을 위한 장치 2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항목들을 볼 때, 주로 대상선정, 평가이행, 결과반영 등과 같은 평가 수행 관련 법 제·개정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림 3-15]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

(n=96, 단위 %)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를 볼 때 평가자 집단인 평가수행기관, 평가단, 자문/심사위원 참여자 및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들은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강제성에 대한 법적 명시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피평가자 집단인 정책 소관기관 담당 공무원들은 평가 대상의 범위 구체화, 의무적 평가 대상 사업 및 계획 지정 명시 등 실제 평가 수행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명시를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는 평가대상 선정 및 자체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평가 수행의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상위 7개 항목):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n=96, 단위 %)

구분		응답자 수	법정평가 로서의 강제성 강화	평가 대상의 범위 구체화	의무적 평가대상 사업 및 계획 지정 명시	평가결과 반영 및 관계기관 협조·이행사항 등을 위한 장치	평가 전담기관 및 조직의 지정 및 기능	평가 유형별 체계와 평가수행 방식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3	65.2	56.5	43.5	30.4	21.7	26.1	13.0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4	66.7	50.0	16.7	29.2	29.2	12.5	20.8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41.7	50.0	50.0	33.3	33.3	16.7	25.0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0	80.0	50.0	30.0	10.0	40.0	30.0	10.0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0.0	20.0	40.0	40.0	60.0	40.0	2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6	37.5	50.0	50.0	6.3	6.3	12.5	25.0
	기타	6	83.3	33.3	33.3	83.3	16.7	0.0	16.7

#### 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시 필요성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나 평가전담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응답 결과, 84.0%의 응답자 대부분이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은 표준 조례안 제시 필요성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였고, 이미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들은 100% 모두 표준 조례안 제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표 3-1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시 필요성: 평가 참여경험별 집단 차이

(n=100, 단위 %)

구분		응답자 수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제시해 줄 필요가 없다
전체		100	84.0	16.0
평가 참여 경험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24	91.7	8.3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25	84.0	16.0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12	83.3	16.7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11	63.6	36.4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5	100.0	0.0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17	82.4	17.6
	기타	6	83.3	16.7

## 5.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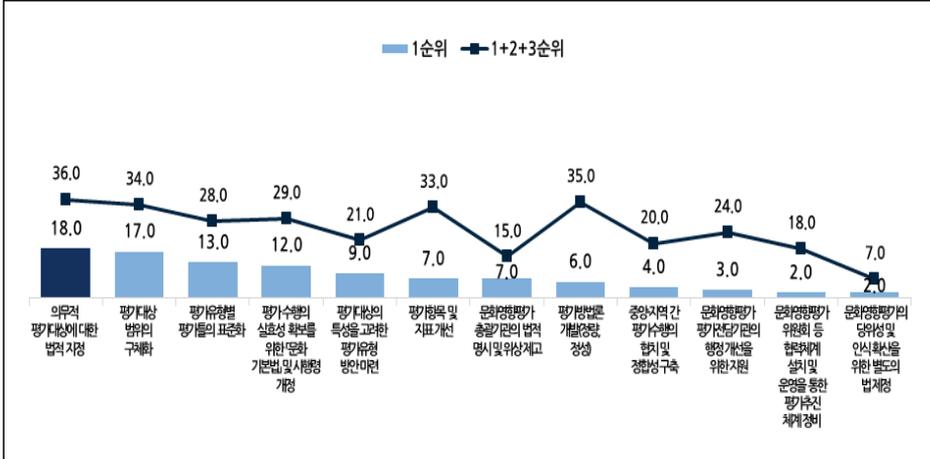
### 가.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

마지막 종합 의견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을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먼저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의 1순위는 ‘의무적 평가대상에 대한 법적 지정’이 18.0%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대상 범위의 구체화’(17.0%), ‘평가 유형별 평가들의 표준화’(13.0%) 등 의무 평가대상 지정 및 평가 수행과 관련한 내용들이 시급히 개선되거나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이는 2018년도에 문화영향평가 개선과제의 시급성을 묻는 전문가 조사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평가 참여 유인 방안 마련’과 같은 평가 수행 자체의 실효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 수행의 방식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2, 3순위 종합 결과도 ‘의무적 평가대상에 대한

법적 지정' 이 36.0%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방법론 개발'(35.0%), '평가대상 범위의 구체화'(34.0%), '평가 항목 및 지표 개선'(33.0%) 등 평가 수행의 개선이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문화영향평가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

(n=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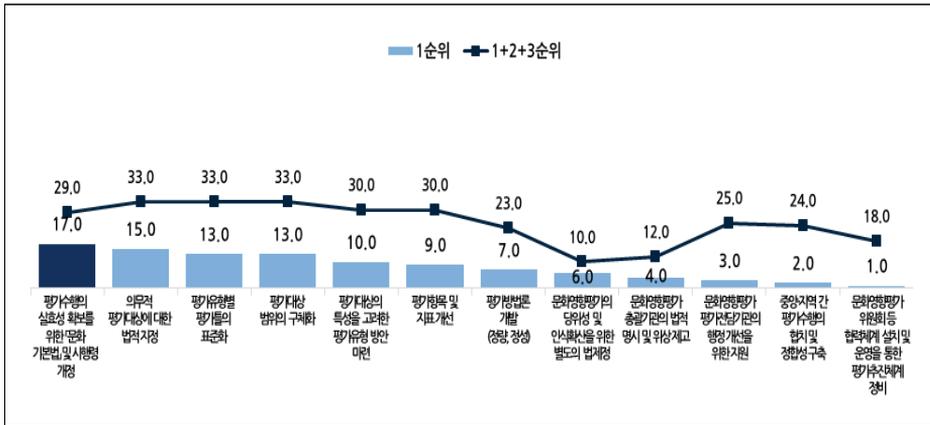


## 나.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 '평가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이 17.0%로 가장 우선시되었다. 이외에도 '의무적 평가대상에 대한 법적 지정', '평가유형별 평가틀의 표준화', '평가대상 범위의 구체화'가 1, 2, 3순위 응답 종합 결과 중 33.0%로 가장 높았다. 2018년도에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한 결과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었다. 결국,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가수행의 개선과 더불어 평가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일 것이다.

[그림 3-17] 문화영향평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

(n=100, 단위 %)



## 제3절 표적집단인터뷰(FGI) 주요 결과

---

### 1. 사전회의의 주요 결과

표적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실시하기 전 시행된 사전회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총 4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 평가 추진 시 애로사항, 평가대상 선정 등 전반적인 문화영향평가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의 경우 지역별로 평가 수행 단계나 수준이 각기 매우 달랐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는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긴 하였으나 실제 지정된 업무 내용은 없으며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추진 관련 진행 및 향후 추진 계획 사항 또한 미정인 상태였다. 반면, 부산광역시에는 현재 문화영향평가 자체 수행을 위한 연구를 출연연구원을 통해 추진 중이며 2020년 하반기에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나 문화영향평가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담당자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석자들의 주된 의견으로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평가 담당자의 지속성, 전문성, 안정성 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담당 부서가 같은 기관 내 타 부서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내부적 반발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평가 결과를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및 대상선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 및 선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서 실제 평가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문화영향평가대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과 같은 문화 관련

계획은 이를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지표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계획의 목적 역시도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즉, 문화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은 문화 관련 계획보다는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타 부처의 계획에 대해 문화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14〉 사전회의 주요 결과

구분	논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	-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단계, 수준 등)이 각기 다 다름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담당자 애로사항	-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의해 문화영향평가만 전담할 담당자의 전문성, 지속성, 안정성이 결여 - 지방자치단체 내 타 부서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반발이 존재 - 평가 결과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및 대상 선정	- 평가대상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음 - 문화 관련 계획이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당위성에 대해 의문임. 오히려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2. FGI 주요 결과

FGI에는 문화영향평가담당 공무원 2명, 문화영향평가에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연구자 3명 및 지역 대학 교수 1명, 총 6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기반으로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적 개선방향들을 논의하였다. FGI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

FGI에서 확인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은 사전회의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아직 각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문화영향평가의 수요 증대를 위한 평가 수행의 행정적, 관리적,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 수행 현황에 대한 관계자 의견

-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위원회를 통해 주로 선정됨
-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시 해당 사업 부서에선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함. 또한 대상 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및 해결책보다는 단순히 문제점만 나열되는 수준에서 평가가 그치기 때문에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조직 내부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임
- 현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공약사항에 넣는 등 서서히 문화영향평가를 알아가고 전파하는 단계로 보고 있음. 다만 공무원 행정 안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경우어나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미비함

## 나.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개선방향

먼저 각 지역에서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째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주요 평가대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은 도시 조성사업과 재생사업이었다. 둘째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초, 계획에 맞추어 단체 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차년도 시행이 확정된 사업들, 혹은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들을 선별하여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매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선정기준이나 범위가 뚜렷하게 정해진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었다.

두 번째로 표준 평가틀에 대해, FGI 참석자들은 사업 대상에 따라 평가 유형을 나누고 그에 따른 표준 평가틀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문화영향평가가 평가 심도나 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마다 동일한 평가 지표의 내용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평가 담당자들이나 평가 수행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준 평가틀을 구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참석자의 다수가 가장 많이 동의한 방식은 중앙의 입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영향평가의 거시적인 공통 평가항목들을 정해 주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 평가항목과 더불어 본인들의 지역적, 사업적 특성들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현재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비슷한 사업 유형임에도 지역마다, 혹은 평가수행기관마다 평가

하는 항목, 내용, 방식 등이 다양각색이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므로 대상 사업에 따라 평가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표준 지표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수행 방식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 FGI 참석자들은 표준 평가들을 마련할 때 평가지표 계량화의 필요성도 꾸준히 언급하였다. 그들은 만일 사업 대상에 따라 평가유형이 나누어질 경우, 유형별 세부 지표마다 사용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수준의 계량 지표들을 정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에 대한 관계자 의견**

- 평가대상의 유형화에 따라 지표 또한 함께 유형을 나누었으면 함
- 지표의 유형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지표마다 체크리스트를 가이드로 정하여 계량화된 지표, 혹은 지수 산출 방식을 만들었으면 함
- 중앙에서 제시한 지표는 거시적 수준의 공통 지표로 사용하되, 지역 특성화 지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지역의 특성을 세세하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평가 수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음
- 중앙 차원에서 큰 틀의 표준 평가들을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지표 등을 마련하여 가는 것에 동의함. 또한 유형별 계량지표가 가능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세 번째로 평가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체감이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수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 감액을 면제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거나,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등의 명확한 유인책을 사업 담당자들에게 제시할 때 평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시에 해당 사업이 타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로서의 매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참고〉 문화영향평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관계자 의견

- 현재 조례상에 평가를 잘 받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없음. 가장 바람직한 인센티브는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의 감액 수준을 조정한다든지 평가 후 문제점 해결 제언 및 후속조치 강화일 것임
- 가점 형태의 인센티브는 사업부서에 오히려 역으로 부담과 피로를 전할 뿐이라고 생각됨. 문화영향평가로 인해 어떤 타 사업의 당락 여부를 정한다는 생각보다 평가를 통해 문화적인 관점을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는다는 형태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임
- 평가를 통해 사업을 단순히 잘 했다 못 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적 제언을 해줄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컨설팅을 확실하게 잘 해준다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가 늘 것임

#### 다. 문화영향평가 조직 관리 개선방향

설문조사에서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강화해야 할 기능 중 1, 2, 3순위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 중 평가전담기관의 연구 개발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및 지원 관리가 있었다. 그래서 FGI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차원에서 중앙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개선과 더불어 지역 평가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가능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중앙 평가전담기관에 대해, 현재 법 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중앙 평가전담기관의 기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만일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설치될 시 어느 기관에 이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내에 평가전담기관의 역할을 하는 부서 등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 선정 및 평가의 전문성과 업무 집중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지역 평가전담기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과 광역(지역) 문화재단으로 추려졌다.

하지만 광역(지역) 문화재단이 평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선 가능할 것이나, 평가대상 선정이나 지원 등 세세한 평가 업무 수준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광역(지역) 문화재단과 평가를 받게 될 사업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평가 수행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지역 평가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평가전담기관을 설치했을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및 인력 확보, 연구 업무 외의 업무 과다 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결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지역 평가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계자 의견**

- 중앙 평가전담기관은 현재 법상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라도 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른 사업부서와의 관계 차원에서도 볼 때 차라리 연구원 쪽으로 예산을 몰아주어 평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지역 출연연구원에 문화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 연구원에서 업무 감당이 될지 등을 생각해볼 때 회의적임. 또한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올 시 중앙-지역 센터 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임
- 문화재단에 지역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원칙, 공정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라. 문화영향평가 법·제도 개선방향**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영향평가 수행의 체계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표준 조례안을 지역에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하였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의 틀 안에서 지역이 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의 작업을 거치게 된다면 평가의 통일성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았다.

**〈참고〉 지역을 위한 문화영향평가 표준 조례안 마련에 대한 관계자 의견**

-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 같다는 차원에서 표준 조례안 마련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임
- 현재 지역이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다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고 그 안에서 지역별로 수정, 보완이 이뤄지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처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지역별로 너무 다양각색이로 제도가 수행되는 것은 옳지 않음
- 표준 조례안이 있으면 제도 활성화와 가속화에도 기여할 것 같음

### 3. 추가 서면자문 주요 결과

추가 서면자문은 FGI에서 도출된 결과 가운데 재확인이 필요한 주제들인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설치, 평가 인센티브의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의무 평가대상 지정을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자 실시하였다. 서면 자문은 문화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평가, 자문,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전, 현직 출연연구원 연구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추가 서면자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GI에서는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필요성에 대해 자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먼저 자문가들은 현 체제와 같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중앙 및 지역의 문화영향평가를 모두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역에서 문화영향평가 수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지역의 현황을 보다 가까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평가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으로 가능한 이유로는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 평가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능력의 충분성 등을 꼽았다.

그러나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설치를 부정적으로, 혹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제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 지역 내에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이 희소하여 실제 평가 사업 진행이 어려울 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으로의 평가 수행 및 관리 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혹은 책임 축소 등을 꼽았다. 그래서 몇몇 자문가들은 문화영향평가의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수준을 예측해볼 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중앙 지원기관으로서 평가를 주관해왔던 평가 조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자문가들은 만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설치될 시, 연구원 내에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할 인력과 조직을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문가들은 현재 광역자치단

체 출연연구원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급 연구원이 1~2명, 혹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고유의 연구 업무 외에 문화영향평가까지 전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운영 전반을 담당할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때, 출연연구기관 내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추가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할 것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것인지에, 혹은 양 쪽에서 매칭하여 함께 지원할 것인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자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을 동의하지 않을 시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및 추가 예산 확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 내용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사업 담당자들이 스스로 평가를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가 수행되는 전문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에 적합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먼저 자체평가에 관하여, 대다수의 자문가들은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사업 담당자에 주목하면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사업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들이 평가에 참여했다는 점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체평가의 경우 표창이나 수상과 같이 평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담당자들을 격려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좋으며,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컨설팅 제공이 적절한 자체평가의 인센티브 방안이라고 보았다. 다만 컨설팅의 경우 담당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되지 않게끔 내용과 수행 방식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평가의 경우, 자문가들은 문화영향평가 수행 실적을 타 심사의 지표에 포함시키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할 시 가점을 적용받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경우 평가 수행의 강제성을 더하고 그 실적을 사업 평가 지표 중 필수 지표로 정하여 평가 수행의 당위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영향평가의 효력 및 효과 제고를 위해 「문화기본법」 개정 시 의무 평가대상 사업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가운데 문화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자문가들은 의무적 평가대상 사업을 법상에 지정하고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사업 중에서 반드시 평가를 수행해야 할 사업들,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에 한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예비타당성이 갖는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생각해볼 때 문화영향평가를 전제 예비타당성평가로 바로 대체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문화영향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적 타당성의 한 항목으로 문화와 관련된 타당성 평가를 대체한다거나, 얼마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법 안에 개정되기 위하여 관련 타 부처와 기관들과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표 3-15〉 추가 서면자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 제도의 정착 및 확산 추진을 전제로 한다면 각 자치단체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li> <li>•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평가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지역 전문가 자 섭외, 현장평가대상지 협의 등에 있어 중앙에 과중된 업무를 분산시켜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광역 단위의 평가전담기관 지정은 긍정적이라 생각함</li> <li>• 하지만 광역 단위 연구기관이나 문화재단이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할 제반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li> <li>• 전담기관을 지역연구원에 지정할 시, 행정에서의 모든 업무 또한 지역연구원으로 넘기고(심지어는 예산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지자체는 실제 정책 추진에서 손을 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역연구원에 전담기관 설치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가장 필수적인 것은 평가 업무를 담당할 연구 인력 및 예산의 확보임.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연 내에 문화 관련 연구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문화영향평가 업무까지 담당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임</li> <li>• 예산지원이 국비인지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인지, 사업비 지원에 대한 기준안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함.</li> <li>• 만일 부처 차원에서 지역 평가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가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리가 없음. 그래서 부처와 지자체 매칭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만 평가전담기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음</li> <li>• 연구원 내 문화영향평가 전담인력 확보와 평가수행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자체 별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li> </ul>

구분	주요내용	
자체평가-전문평가 별 인센티브 방안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발적 의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포상, 표창, 또는 국가예산 확보 등의 인센티브가 적절함</li> <li>• 공무원이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향후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봄</li> <li>•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담당자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함. 다만 담당자의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실행되어야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음</li> </ul>
	전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수행 실적이 향후 타 심사의 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문화영향평가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사업에 대한 여타 심사 지표에 전문평가 수행실적이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좋으나, 이는 문체부와 타부처간의 협의 절차가 꼭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임</li> <li>• 지방자치단체 타 유사 사업 진행 시 가점을 주는 방안,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지원, 후속평가 수행 지원 등도 고려해보 수 있음</li> </ul>
「문화기본법」개정안에 의무 평가대상 사업 지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본법」개정은 꼭 필요함. 특히 평가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내용 등이 법 개정안에 담겨야 함</li> <li>• 예시로 든 문화영향평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것은 평가제도 정착과 효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음</li> <li>• 문화영향평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전 대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얼마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혹은 예타 조사 중 '일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준의 규정이 개정법에 담기는 것이 현실적임</li> <li>• 예비타당성의 대체를 위해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전문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ul>	

## 제4절 소결

---

본 장에서 실시한 관계자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인터뷰(FGI)의 내용 분석 결과는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됨에 따라,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에 이어 현재까지 문화영향평가에 경험이 있는 여러 부류의 관계자들은 여러 정책 및 계획의 시행에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미치는 과거와 현재의 영향력이 존재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문화영향평가가 미치게 될 기여도 또한 더 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분야의 정부 정책 및 계획,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입지를 굳히고 다양한 평가 대상이 지닌 문화적 영향력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둘째, 평가 수행 차원에서 대상 사업의 요소, 방향, 목표, 내용 등 사업이 지닌 핵심 성격에 따라 평가 유형이 구분되어야 하며, 이후 각 평가 유형별 표준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등 표준 평가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주체 및 심도 등에 따라 평가 유형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는 평가의 유형을 나눌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 대상 및 정책이 지닌 핵심 내용 및 요소들을 꼽았으며, 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표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목적 및 원칙, 평가결과의 환류 방식들을 담은 평가 유형별 표준 평가틀이 필요할 것을 보여주었다. FGI에서도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평가유형을 나누어 그에 따른 정량적 평가지표, 특성화 지표 등을 적용한 평가 수행 체계 마련하는 것이 평가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유형 구분 방식은 평가대상 사업의 핵심 내용, 성격 등에 따라 나누고 유형별 평가 수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하겠다. 이 방식은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타 영향 평가들이 수행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조직 관리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성을 위해, 평가 총괄부처인 중앙 행정기관 및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및 평가전담기관이 주어진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 예산, 행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시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문화영향평가가 지역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 및 평가전담기관이 지역의 문화영향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FGI 및 추가 서면자문에서는 중앙 외에 지역 평가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협력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려 했다. 하지만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설치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기관의 예산, 인력, 업무 등을 책임질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만일 지역 평가전담기관을 설치할 기관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게 될 제도 관리의 물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합의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한계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총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재 평가전담기관으로서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기능 개선을 통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제도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효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상에서 평가대상의 범위 및 의무 평가대상에 대한 지정 등 법정 평가로서의 문화영향평가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크다. 또한 현재까지 「문화기본법」 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평가 수행 단계별 지침, 평가 관련 조직의 기능 등이 법안에 담겨서 평가 수행 및 조직 관리의 체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 설문 및 FGI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수행의 정합성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결국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과 조직 관리 등 평가 운영체계의 정립은 평가의 주요 단계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은 법·제도를 바탕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의 제·개정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제4장

##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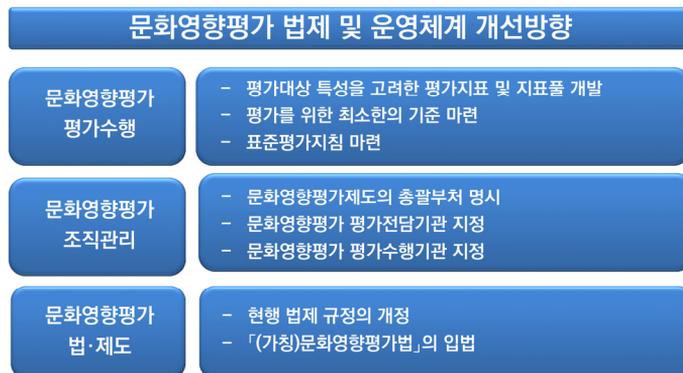


## 제1절 개요

문화영향평가는 2014~2015년의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평가제도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평가대상 계획이나 정책 혹은 사업 등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측면인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 방향은 ‘평가대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와 ‘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다. 둘째는 조직관리 측면인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방향은 문화영향평가의 확산과 체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내 전담 조직’의 설치이다. 셋째는 법·제도적 측면인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방향은 중단기적으로는 현행법령의 조항 신설 혹은 일부 개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제정이다.

[그림 4-1] 문화영향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안)



## 제2절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개선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 방향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평가대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표를 개발’ 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가에 대한 편견과 남용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평가의 정합성을 확보를 위해 ‘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영향평가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평가대상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전략이,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시행 및 절차상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 중 특히 제도 시행 및 절차상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평가시행 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마다 평가지표 체계와 그에 대한 이해 및 해석,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여 많은 행정·재정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과 결과의 비교 검토나 정보공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아울러 그 실천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표 개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지표는 표준지표 형식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새롭고 다양한 평가대상에 대한 수용성과 확장성이 부족하다. 또한 표준지표에 해당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평가대상마다 지니고 있는 특수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이에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자체평가 중 약식평가는 평가대상에 적합한 지표를 적용한 평가서 양식을 개발하여 진행하였으며, 전문평가 중 전략평가에서도 절차 안에 스코핑(scoping, 평가서 작성 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이라는 과정을 두어 평가대상에 맞는 지표를 개발 및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약식평가의 경우 해당 대상의 유형에 적합한 지표를 적용한 몇 가지 평가서 양식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평가의 경우도 현재 모든 유형에서 스코핑 과정을 절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평가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대상 혹은 유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약식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적합한 지표를 즉시 개발하여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평가대상도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에 대한 사전준비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2018과 2019년에는 약식평가 대상 유형이 동일하여 큰 문제는 없었지만 2020년에는 그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평가 수행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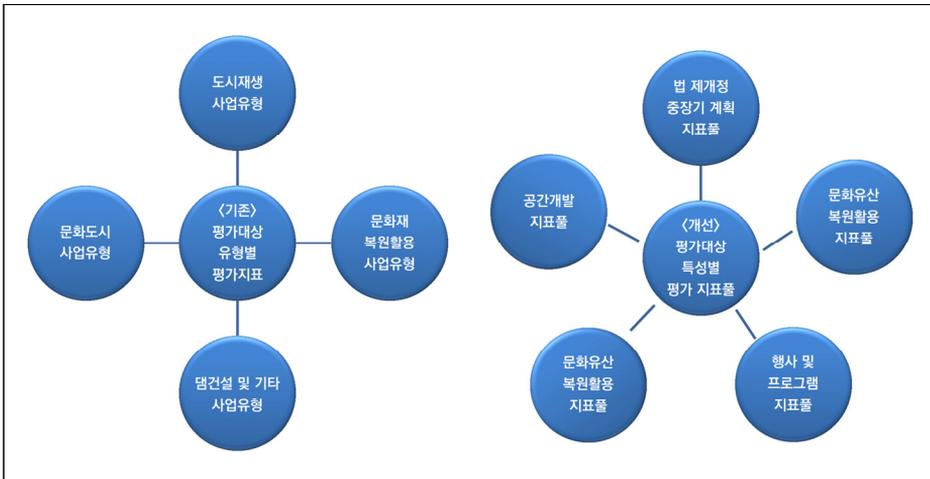
이에 단일 형식의 평가지표가 아닌 평가대상 간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평가대상 유형별(예: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등) 평가지표 체계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리라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평가대상 유형별 지표의 경우에도 평가대상의 범주화에 맞춘 접근이 되므로 개개의 대상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세부적 특성은 대상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도시재생사업들의 경우에도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활용을 포함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적용해야 할 지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특성(예: 시설 신축 포함 여부, 인구이동 발생 여부, 문화재 복원 및 활용사업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한 지표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타 영향평가들에서도 채택된 방식이며 또한 제3장의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물론 이 방식은 그동안의 문화영향평가에서도 평가지표별 고려사항 내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시되어 활용되어 왔지만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종이에 인쇄되어 있어서 대상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 발휘나 탄력적 적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문서 양식의 평가 방법에서 기인하는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구축 중인 (가칭)문

화영향평가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평가자 스스로 평가에 사용할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여 서면평가 방식이 지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 혹은 계획이 선정되더라도 그것에 고유한 속성 혹은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하고 구축함으로써 평가대상에 대한 사전적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추후의 평가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4-2]와 같이 특성별 지표표를 계속하여 축적하고 새로운 특성의 발굴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평가 대상들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맞춤형 평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선 방향 비교



## 2.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 가. 평가의 목적과 원칙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공공정책들이 최소한의 문화적 기준(cultural minimum standards)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혹은 충족시켰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을 지니며, 해당 공공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영향의 예측·분석을 통해 큰 틀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가대상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한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컨설팅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공공정책, 특히 문화정책 이외의 분야에서 수립·추진되는 공공정책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기제(correction mechanism)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화컨설팅과는 차이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381-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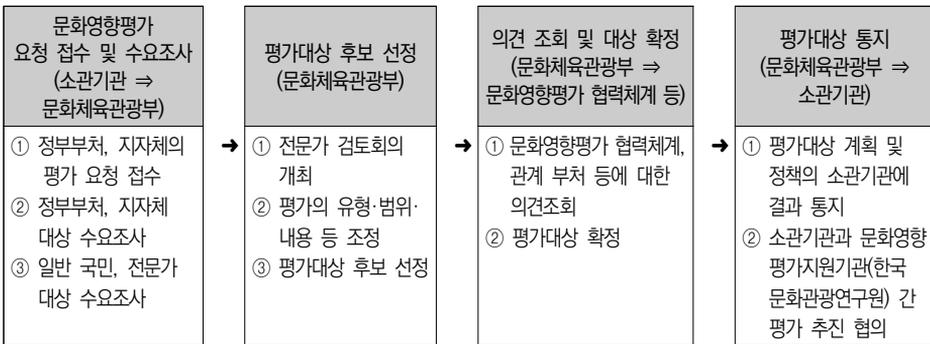
한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정책이 보다 개선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과정이 갖추어야 할 원칙들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문화영향평가의 원칙이라 한다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정합성으로, 평가대상들이 「문화기본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평가대상 계획이나 정책의 근거 법령에 포함된 문화 관련 원칙이나 기준 등을 수용하고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는 공공성으로,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인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과 협의에 필요한 정확한(왜곡이 없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맥락성으로, 평가대상 계획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적 요소 및 여타 환경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파악이다. 넷째는 적실성으로, 평가대상 계획이나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인 문화적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의 제안이다(이상열·박종웅·노수경, 2019: 164-165.).

## 나. 평가대상 선정방식과 선정 기준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대체로 수요조사 이후 각자의 위원회와 협력체계(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서울특별시는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행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방법, 대상선정 및 그 밖에 평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협력체계의 위상도 미약하고 협력에도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대상선정 절차는 아래 <표 4-1>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수요조사이며, 두 번째 단계는 사전 검토 기준에 따른 후보군 및 평가유형별 평가대상 분류이고, 세 번째 단계는 해당 후보군 및 평가유형별 평가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나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통한 최종 평가대상 및 평가유형 확정이고, 네 번째는 평가대상 확정 통지이다.

<표 4-1>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일반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p.21.

후보군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기준은 합목적성, 범위의 적정성, 문화적 영향력, 평가 수행가능성, 평가결과의 효과성이다(<표 4-2> 참조). 하지만 이들 기준은 평가시행자 중심으로 한정되었고 정성평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올해부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시 피평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으로 하여금 체크리스트방식의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이 추가되었다(<표 4-3> 참조).

〈표 4-2〉 문화영향평가 후보군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기준

구분	내용
합목적성	해당 계획이나 정책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가?
범위의 적정성	해당 계획이나 정책의 내용적·공간적 범위는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문화적 영향력	해당 계획이나 정책의 집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문화적으로 유의미(긍정적, 부정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평가 수행가능성	해당 계획이나 정책은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확보 및 소관기관과 협력 등의 측면에서 평가의 수행이 가능한가?
평가결과와 효과성	해당 계획이나 정책은 평가의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이상열·이경진(2019),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p.35.

〈표 4-3〉 문화영향평가 평가 신청을 위한 사전검토서 양식

구분	내용
문화 관련성	1. 해당 사업과 공공 문화정책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다소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낮다 ⑤ 매우 낮다
	2. 해당 사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크다 ② 다소 크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작다 ⑤ 매우 작다
파급 효과	3.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큰 편입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아닌 편이다 ④ 거의 아니다 ⑤ 잘 모르겠다
	4. 해당 사업의 시행 중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아닌 편이다 ④ 거의 아니다 ⑤ 잘 모르겠다
	5. 해당 사업이 문화적 가치(문화향유, 표현과 참여, 문화유산, 지역공동체, 문화다양성, 문화적 창의성 등)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아닌 편이다 ④ 거의 아니다 ⑤ 잘 모르겠다
	6. 해당 사업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 및 문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아닌 편이다 ④ 거의 아니다 ⑤ 잘 모르겠다
	7.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크다 ② 다소 크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작다 ⑤ 매우 작다
	8. 해당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크다 ② 다소 크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작다 ⑤ 매우 작다
공공성	9.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집단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아닌 편이다 ④ 거의 아니다 ⑤ 잘 모르겠다
	10.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평가결과 환류	11.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의 시행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붙임 자료 중 사전검토서.

평가유형별 대상 선정기준은 이상열·박종웅·노수경(2018)과 이상열·이경진(2019)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제시된 선정기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평가는 전문평가 중심으로 운용한다. 둘째, 간소한 방식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평가 대상으로 한다. 셋째,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업이나 이와 같은 성격의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 대상으로 한다. 넷째, 기존 주민의 진출이나 거주 이전을 야기하는 계획 및 정책의 경우에는 전문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섯째,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이 소수집단이나 취약계층의 문화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 계획 혹은 정책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수집단,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평가 대상으로 한다. 여섯째, 문화적 영향의 범위와 크기가 작지 않은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은 전문평가 대상으로 한다(이상열·이경진, 2019: 167-168).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형별 대상선정은 이들 선행연구를 원용하고 제2장에서 제시한 <표 2-2>의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평가 구분 및 유형” 가운데 “평가 심도에 따른 평가유형 및 특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평가대상 선정기준은 중앙부처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 간의 정보공유와 제도 조정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의 기준은 영향범위가 전국 단위 혹은 최소 2개 이상의 광역 단위를 포함하는 법, 정책,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영향범위가 지역 단위인 법, 정책,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대부분은 영향범위가 지역 단위에 그치는데, 이는 물론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 문화영향평가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이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각자 마련하여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현재 일부 타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문화영향평가의 인정 범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문화영향평가로 제한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영향평가 대상선정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등을 통해서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상열·이경진(2019)의 연구에서도 제안되었듯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선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 다. 평가지표 정의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법」 및 관련법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부합한다.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지표는 3개 평가영역, 6개 평가지표, 12개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다(〈표 4-4〉 참고).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지표는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는 유지하면서 고려사항(12개→14개)에 일부 수정·보완되었다. 반면,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달리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2개 평가가치, 8대 평가영역, 26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다(〈표 4-5〉 참고).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모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평가지표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비교가능성 제고, 문화영향평가의 확장 등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들은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실제의 평가 과정에서 지표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용어도 어려운 것이 많아 이해와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의 기본체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의 평가지표로 불충분한 그 밖의 사항은 기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특성화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해왔다. 그러나 새롭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특성화지표를 개발·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된 지표가 기존의 지표와 중복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지표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표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평가의

정합성을 위해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법령상의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되도록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예시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여 문화영향평가 수행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략한 내용과 형식의 지표정의서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표 4-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고려사항
공통 지표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문화향유수준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활용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평가수행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9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p. 8.

〈표 4-5〉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지표

평가가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향수권	문화인프라, 접근성, 향수프로그램, 사용자 개발
	참여권	참여프로그램, 예술교육, 공동체 문화형성, 예산·기회 참여
	경관·환경권	조망권, 선도성, 지역과의 조화
	기반조성권	인적기반, 시설기반, 재정기반
문화다양성	시민다양성	다문화, 계층다양화
	차이수용성	성별차이수용성, 연령차이수용성, 장애차이수용성, 지역차이수용성
	정체성	문화환경보존, 전통문화계승, 지역문화고유성
	예술다양성	장르다양성, 창작다양성, 공공, 다원 소수자 문화

자료: 이동연 외(2016),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개발 컨설팅, p. 62.

## 라. 평가유형 및 평가방법

현행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유형은 평가방식에 따라 크게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된다. 이 중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의 평가이며 전

문평가는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의 평가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전문평가 방식으로만 평가를 수행하고 있을 뿐 자체평가 방식을 도입한 곳은 없다. 그렇다 보니 문화영향평가의 영역이나 방법 혹은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평가 중 약식평가는 2018년에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상열·박종용·노수경(2018)에 따르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약식평가는 문화영향평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도출되었다. 이에 2019년의 약식평가는 심도를 낮춰 수행되었으며 약식평가 대상 중 향후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평가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기존의 약식평가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상호평가'라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상호평가는 우선 정책 담당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를 서로 비교·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정책 담당자의 자체평가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약식평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약식평가의 취지인 문화영향평가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자체평가 내 진단평가는 약식평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전의 약식평가와 같은 방식(정책담당자 스스로 평가 + 전문가 검토)으로 진행되지만 내용과 형식면에서 훨씬 쉽고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했으며,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전문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자체평가는 평가 기간도 짧고, 셀프 평가이며, 별도 분석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나마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 스스로가 직접 수립 및 수행 중인 계획 및 정책에 대해 평가해 봄으로써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은 결코 미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영향평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혹은 추진 중인 자체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점 등을 계속 수정·보완하고 자체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문화영

향평가 지침에 담아 평가수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평가의 경우, 그 방법 있어서는 아직까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사항 즉, 스코핑 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범위 및 지표의 확정, 평가서 초안 작성, 본 평가서 작성 등은 문화영향평가 지침에 문화영향평가의 표준 방법 중 하나로 수록하여 평가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마. 평가절차

문화영향평가의 절차는 평가유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평가 이전 단계, 평가 단계, 평가 이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표 4-6>은 자체평가(정책 소관 기관 담당자 스스로 평가)와 전문평가(제3의 전문기관 평가)의 절차를 보여준다.

평가진행은 자체평가와 전문평가에 적용되는 과정이 다르다. 우선 자체평가의 경우, 먼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영향평가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후 진단평가는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진단평가 검토서가 작성된다. 약식평가는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장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와 상호평가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약식평가 평가서가 작성된다. 한편, 전문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의 수집 분석, 현장조사, 스코핑, 전문가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마친 다음 전문평가 평가서가 작성되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정책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전문평가의 ‘평가단계’에서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 및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비교가 가능하게끔 문화적 영향의 예측(또는 평가) 기준이 되는 계획과 정책의 시행 이전 상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4-6〉 2020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별 표준 평가절차

구분		자체평가		전문평가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	
평가 진행	평가 운영	사전교육	소관기관 평가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자문단(검토위원, 평가위원)		평가수행기관 연구진 대상 문화 영향평가 교육 및 워크숍	
		평가 준비	평가서 및 검토의 견서 양식 배포 (평가지원기관→ 소관기관, 전문가)	평가서 양식 배포 (평가지원기관→ 소관기관, 전문가)	착수보고: 추진계획 및 세부내용 (전문가자문단 의견 제시)	
		검토 단계	평가대상 정책 및 현황자료 분석	평가대상 정책 및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평가대상 정책 및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지표 설계			영향요인 파악 및 영향 예측, 이슈 도출 및 영향의 식별 스코핑, 지표 및 평가방법론 확정	
		평가 시행	진단평가서 작성 및 제출(소관기관 →평가지원기관)	약식평가서 작성 및 제출(소관기관, 전문 가→평가지원기관)	현장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평가 등 설문조사 실시 중간보고(전문가자문단 의견 제시)	
		결과해석 정책 제언 도출	검토의견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해석(예상시나리오 제시) 정책제언 도출 최종보고(전문가자문단 의견 제시)	
		결과 도출	결과제출	평가검토서 제출 (평가지원기관→ 문체부)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지원기관→ 문체부)	평가보고서 제출 (평가수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결과통보	평가결과 검토 및 통보(문체부→소관기관)					
환류	결과환류	반영결과(예정) 공문 제출(소관기관→문체부)				
	지속환류	모니터링 및 사후조사, 과정·사후조사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 문화영향평가 안내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평가이후 단계에서는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제언의 반영 및 개선 여부를 제출받고, 해당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아직 평가반영 결과 제출 의무와 모니터링 및 사후조사 실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전평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행 문화영향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영향평가 이후 계획 및 정책 추진으로 발생된 문화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조사를 평가절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수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가절차는 대체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확산에 대비하여 표준평가절차의 마련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표준평가지침 마련

이상에서 살펴본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와 ‘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은 문화영향평가의 표준평가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표 4-7>과 같다.

<표 4-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지침 구성(안)

구분	내용	비고
문화영향평가 개요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와 목적, 평가의 원칙	매년 변경사항 표기
	문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정책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체계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절차 및 방법	
	문화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	
	문화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문화영향평가 지표정의서	매년 변경사항 표기
	평가대상 특성별 평가지표	

구분	내용	비고
평가유형별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전문평가)	평가유형별 평가개요	평가유형별 별도 구성
	평가유형별 추진 체계	
	평가유형별 추진절차(대상선정, 평가서 작성 및 제출, 검토 및 평가의견 통보, 반영계획 제출 및 관리 등)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평가유형별 결과보고 및 환류	
문화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문화영향평가센터)	법 제·개정 내용과 연계
	문화영향평가시스템	
	문화영향평가교육	
참고자료	관계 법령	매년 변경사항 표기
	평가대상 특성별 지표물	
	문화영향평가 주요 양식	
	문화영향평가 주요 개선 사례	
	문화영향평가 관련 참고 사이트	

자료: 이상열·이경진(2019),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p.180 참고하여 재구성

## 제3절 문화영향평가 조직관리 개선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방향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영향평가의 총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역할과 기능 명시함으로써 평가 시행 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관계 및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과 평가수행기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평가추진 및 시행체계 마련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과 함께 평가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토, 데이터 수집·관리 및 활용, 지표폴 구축,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이 중 특히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향후 문화영향평가 수요가 증대할 것을 감안할 때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방식으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아울러 그 실천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명시

#### 가. 문화영향평가 총괄부처 명시 필요성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4조, 시행규칙 제2,3조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법에 명시된 세 가지 주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법상 평가 주체 이외의 사항(평가추진 및 운영 체계 등)이 모호한 관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론 문화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문화기본법」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총괄부처의 지위와 역할은 현행법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2018년 1건, 2019년 4건), 서울특별시(2018년 2건, 2019년 2건), 경상남도 창원시(2020년 1건) 등인데, 이들 지역들이 적용하는 문화영향평가의 규범적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문화영향평가 관련 조항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는 별도의 관련 조례 없이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했다. 이런 사실들은 2020년 6월 현재 정보 공개포털(<https://open.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이나 관련 규정 신설을 준비 중인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영향평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문화영향평가 관계법과 상관이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나 그 밖의 사항들 즉, 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여야 하는 지 등 서로 간에는 어떠한 역할과 의무가 있는지 등이 애매한 상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타 영향평가에서와 같이 부처 내에 문화영향평가 전담부

서를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주체인 여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나. 문화영향평가 총괄부처의 주요 업무

문화영향평가 총괄부처의 주요 업무로는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 총괄, 여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관리, 평가수행기관 등록·관리,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구축·운영, 평가결과 모니터링 및 관련 DB 구축·활용, 문화영향평가 지침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 평가결과 취합, 평가결과 반영결과 검토,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문화영향평가제도 관련 정책 마련 및 연구 지원, 사후조사 관리,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이중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운영 및 관리 업무로 인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문화영향평가의 행정조직이나 평가전담기관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별 분류,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방법론 개발 등 상당한 연구기능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이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업무 분장의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대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그 특성과 전문성에 비추어볼 때 문화영향평가의 기반 마련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구 및 교육 중심의 업무 즉, 평가 수행,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발, 평가 및 지표 교육, 평가결과 모니터링 및 관련 DB 구축,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홍보 및 대외협력 등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부처의 업무와 평가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선을 통해 명시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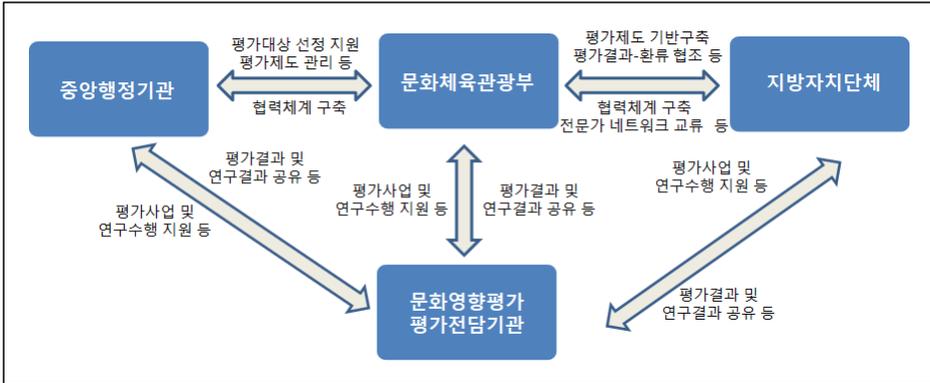
## 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 가.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영향평가의 행정조직과 수행기관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별 분류,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방법론 개발 등 상당한 연구기능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이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유일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기관의 역할과 권한, 조직·예산상 법적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문화영향평가 담당 인력으로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 시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평가전담기관의 역할과 권한, 전담조직, 예산 등의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시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설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지정은 평가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체계 제도화와 평가 확산 및 실효성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필요한 기준은 지정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법을 통해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림 4-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운영 체계(안)



### 나.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목적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하는 문화영향평가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별도의 기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은 「문화기본법」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화연구원)이 평가전담기관의 일환인 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에는 문화영향평가 사업 및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전담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지원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문화영향평가 수행실적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넘어서 문화영향평가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는 전문적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없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이렇듯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평가사업 수도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과 필요시 평가전담기관 내 평가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영향평가 시행 확대와 평가의 실효성 제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체계의 제도화,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별 혹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고도화, 평가 지표폴

구축, 문화영향평가 사업 추진,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R&D)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영향평가 영역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목적



#### 다.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방향 및 근거

평가전담기관 지정은 문화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 실정에 맞게 중앙에만 지정하거나 중앙과 지역에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물론 가급적 중앙과 지역에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 문화영향평가의 전체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효율적이겠지만 현재와 같이 평가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 간에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준비 상태가 상이한 경우 오히려 제도 운영에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에 중단기적으로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은 단일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예를들면, 문화영향평가센터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평가전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 및 지역 단위의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는 문화영향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사업 추진 주체인 지역

단위에서의 평가지원 혹은 평가전담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방자치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자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다양하고 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수요 역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 단위, 광역,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책들에 대해 각각의 범위와 특성에 맞게 문화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광역-중앙 평가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을 「문화기본법」 혹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거나 「(가칭)문화영향평가법」 등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지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에 평가전담기관 지정 기준 및 업무 내용 등과 필요시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라.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시 그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정책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문화분야 정책 연구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도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제2장에서 평가전담기관의 운영 사례로 제시한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기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지정기관으로 명시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공익법인 중 관련 학술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을 지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이 요구된다. 첫째,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경력, 둘째, 문화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셋째,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주요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이다. 특히,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전문인력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 및 연구 계획·수행·관리·감독 등 전담기관 운영 총괄을 위한 책임자가 필요하며 평가사업 운영(대상선정, 평가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평가 수행 전·후 모니터링 등), 연구계획 및 수행(평가지표 관리, 평가결과 검토·분석 등)을 위한 직원 및 전문연구자도 필요하다. 이 중 전문연구자의 경우는 평가사업 지원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최소 1명 이상의 박사급 전문가가 요망된다. 즉,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인력 구성은 책임자를 제외하고 박사급 전문연구자와 사업 운영 및 지역 평가전담기관 지원·협력을 위한 직원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인력이 요구된다.

〈표 4-8〉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인력 구성(안)

구분	인원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 구성	기관 내 총괄 책임자	1명
	직원 및 전문연구자	최소 5명 이상

### 3.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 가.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기관의 수와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아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수행기관 선정 시 어려움이 있다. 특히, 평가대상지가 지역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수행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나.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의 방향 및 근거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수행기관의 지정은 평가대상의 범위에 따라 전국 단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부터 지역 단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평가수행기관의 분야도 문화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을 「문화기본법」 혹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거나 「(가칭)문화영향평가법」 등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지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다.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대상은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대상 기준과 거의 같다. 왜냐하면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도 필요한 경우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가수행기관 지정 시 그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정책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문화분야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도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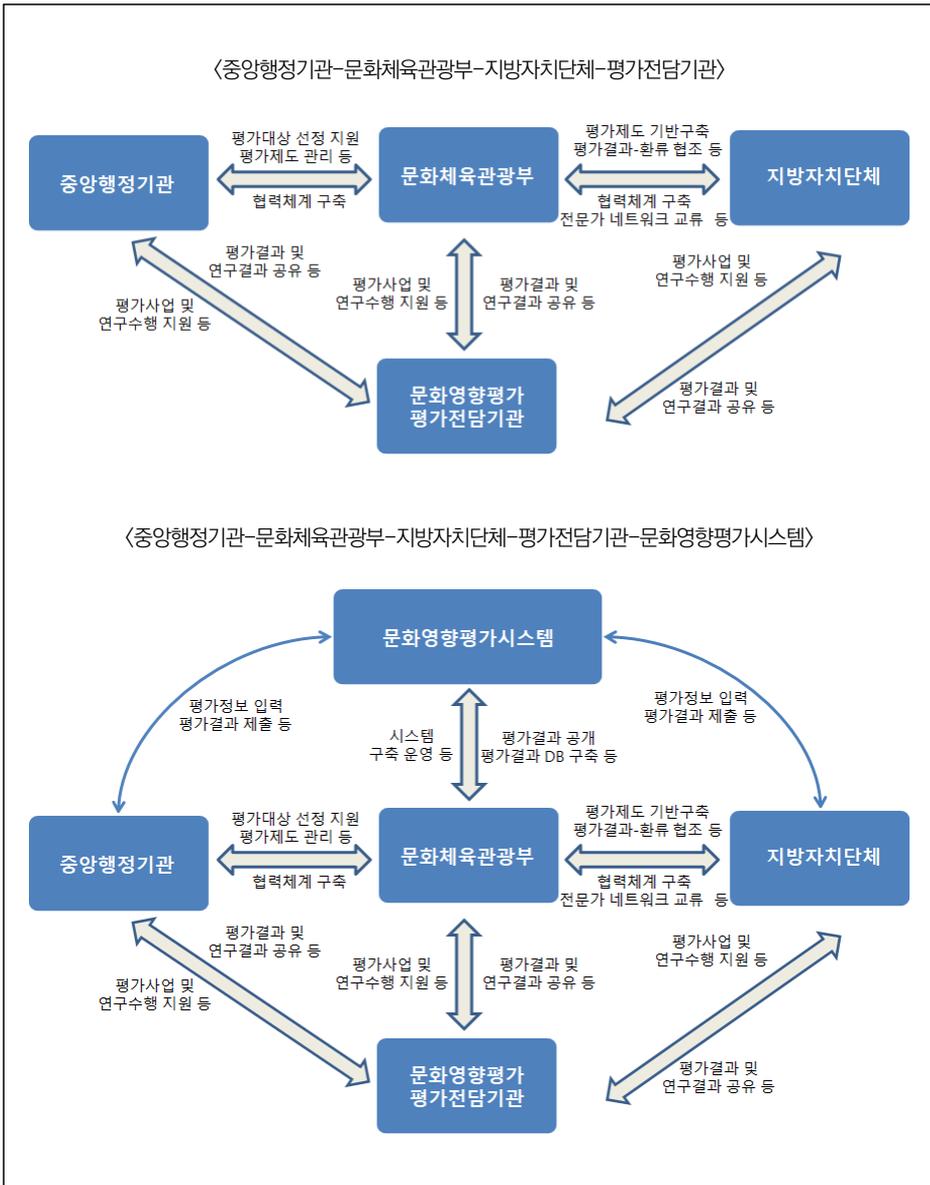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제2장에서 평가전담기관의 운영 사례로 제시한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기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지정기관으로 명시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공익법인 중 관련 학술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을 지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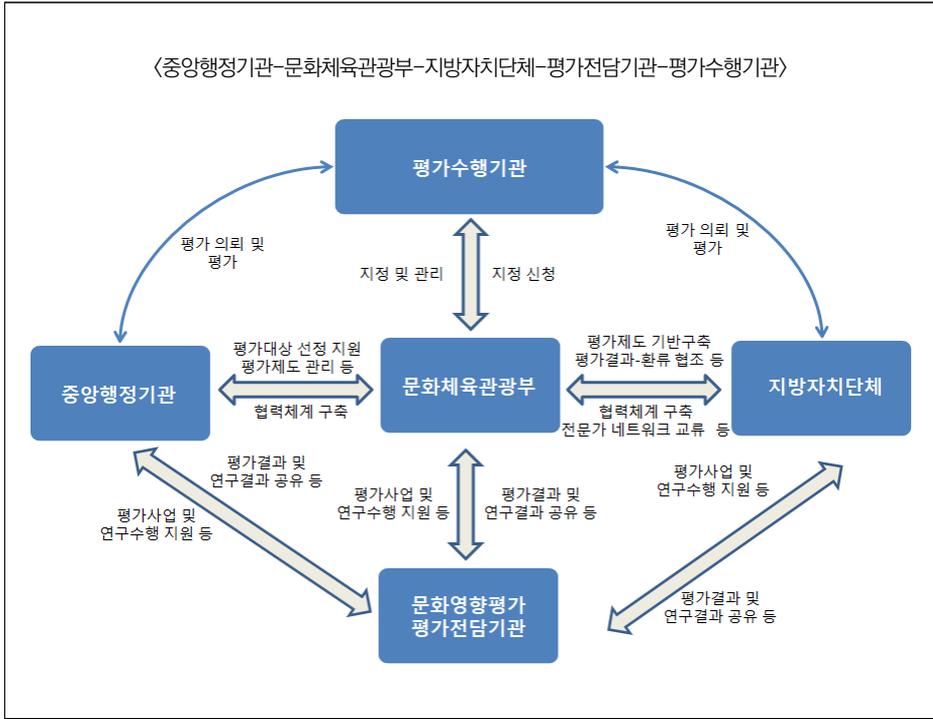
평가수행기관의 지정은 일정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때 지정 기준은 지정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법을 통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과 함께 평가수행기관의 지정은 평가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평가사업과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체계 제도화와 평가 확산 및 실효성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림 4-5] 문화영향평가 종합 운영 체계(안)



[그림 4-5] 문화영향평가 종합 운영 체계(안)

(계속)



## 제4절 문화영향평가 법·제도 개선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방향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의 내용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규칙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평가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평가수행(평가지표 및 평가 지표표 개발, 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등) 및 조직관리(평가 총괄부처의 명시, 평가전담기관 설치 등)에서의 한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이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아울러 그 실천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

현행 법제의 개정은 현재 문화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시행령」, 「문화기본법시행규칙」 등의 내용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규칙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시행령」 등에서 상세히 제시할 수 없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절차·평가방법·전담기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가칭)문화영향평가 대상·절차 및 방법 규정」)의 마련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다.

## 가. 평가대상 구체화

현행법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상 사업의 범위도 모호하다. 그러므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현행 「문화기본법」 및 「문화기본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중인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으로 명시하거나, 둘째,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 대상 등) 제1항의 각호에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셋째, 앞의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평가 제외 대상을 명시하거나,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표 4-9〉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개선 방안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문화기본법」 문화영향평가 대상 규정 신설</b></p>	<p><b>제5조의2(문화영향평가 대상)</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중인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 대상 등 규정 개정</b></p>	<p><b>제2조(문화영향평가 대상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문화영향평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 추진 중인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li> <li>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사업</li> <li>3.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li> <li>4.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li> <li>5. 기타 중요한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li> </ol>

개선 방안		개정(안)
	평가제외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li> <li>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li> <li>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li> </ol>
	기타	③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정한다.

## 나. 평가결과 환류 명시

현행법상 문화영향평가 이후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 등의 환류 규정은 없다. 이에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결과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개선 의견 권고, 피평가기관의 개선 계획 제출에 대한 사항 등을 「문화기본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개선 방안은 (1단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단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3단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3단계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표 4-10〉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개선 방안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등 규정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결과 환류</p> <p><b>제2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p>

#### 다. 평가 확대 및 기반 구축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문화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피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 등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지원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문화영향평가 사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 지원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문화기본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확대와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 및 지역에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과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때, 중앙 및 지역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에 전담부서((가칭)문화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명시함으로써 평가전담기관 안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전문적, 안정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평가전담기관은 평가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기관이 아닌 평가지표, 방법 연구 및 개발과 평가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고, 지정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수행기관 관리 및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평가전담기관의 업무와 구분을 명확히 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확대 및 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표 4-1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확대 및 기반 구축 법률 개선 방안 및 개정(안)

개선 방안		개정(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 교육 등 규정 신설	평가 교육	<b>제4조(문화영향평가 교육)</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정한다.

개선 방안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규정 신설</p>	<p><b>제4조의2(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은 평가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 연구기관</li> <li>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li> <li>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영향평가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지표개발 등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li> <li>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li> <li>3.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li> <li>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li> <li>5.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위탁하는 사업</li> </ol>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경력</li> <li>2. 문화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li> <li>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li> </ol>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3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규정 신설</p>	<p><b>제4조의3(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에 의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 연구기관</li> <li>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li> <li>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li> </ol> <p>②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시스템 규정 신설</p>	<p><b>제4조의4(문화영향평가시스템)</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문화영향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문화영향평가시스템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정한다.</p>

## 2.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

문화영향평가 법·제도의 두 번째 개선방향인인 별도의 개별법으로서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 입법과정 즉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대상·기준·방법·전담기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를 소개하고 그 세부사항은 개별법과 시행령 및 규칙에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무려 6장까지 약 76개의 조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도 약 79개의 규정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도 약 38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많은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법·개별법·시행령·시행규칙상 대략 총 200개의 적지 않은 조문들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문화 분야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에는 문화다양성 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해야 하는 문화영향평가 지표로 문화기본권(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정체성(문화유산, 공동체), 문화발전(문화다양성, 창의성) 사항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문화영향평가의 구체화를 위한 「문화영향평가법」, 「문화영향평가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서 환경영향평가 못지않은 많은 규정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화영향평가법」이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도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영향평가법」의 관련 사항들을 그 운영과정에서 더욱 정치하게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체계적·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표 4-12〉 「(가칭)문화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 주요 내용(안)

구분	「문화영향평가법」	「문화영향평가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목적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영향평가 대상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범위 등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시 구체적인 세부사항 결정 등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문화영향평가 지침 안내	
	문화영향평가 시기	문화영향평가 시행 시기	
	문화영향평가 절차	문화영향평가 절차의 단계, 과정, 예외 등	문화영향평가 절차 의견청취, 의견수렴절차·방법 등
	문화영향평가 방법	문화영향평가 방법의 기준, 평가유형별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	문화영향평가 방법, 세부기준 예외, 자체평가 예외, 전문평가 예외 등
	문화영향평가 환류	문화영향평가 환류의 개선계획, 이의제기 등	문화영향평가 환류 이견 시 사유서 제출 형식 등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등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방식의 협의 등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의 신고·등록 등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의 신고·등록 기준 및 방법
	문화영향평가 교육	문화영향평가 교육 센터 등	문화영향평가 교육 센터 수 등
문화영향평가 중장기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중장기계획 수립시기 등	문화영향평가의 중장기계획 시행 시기 등	

## 제5절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 1.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그동안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별도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중장기적 기본계획 없이 당해 연도의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가장 유사하게는 2017년에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발전방안」이라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해당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일 뿐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은 아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적 계획이 없이 당해 연도의 운영 계획으로 추진되는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없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이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관계로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은 그 지향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처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아닌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문화영향평가 중장기 기본계획에 제시되어야 할 주요내용으로는 계획 수립의 배경(제도 도입 배경, 평가의 위상과 범위, 평가의 특징, 평가의 여건과 전망 등), 계획의 기본방향(평가 제도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기본방향, 평가 제도의 미래상), 전략별 추진계획과 및 실행방안(실천전략 수립과 평가결과 환류, 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국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발전방향 등이 있을 수 있다.

## 2. 평가지표 개발 및 표준평가지침 마련 공시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지표는 표준지표 형식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새롭고 다양한 평가대상 유형에 대한 수용성 및 확장성이 부족하다. 또한 표준지표에 해당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다보다 평가대상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면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특성(예: 시설 건축 포함 여부, 인구의 이동 발생 여부, 문화재 복원 및 활용 사업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하다. 즉,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어느 것으로 결정되던지 평가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하고 구축함으로써 평가대상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특성별 지표표를 계속해서 쌓고 새로운 특성에 대한 발굴을 동시해 지속해 나감으로써 평가대상 특성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평가대상 특성별 지표 개발, 정량적 지표 개발 등)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문화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개발은 한 번의 연구로 완료될 수 없는 것이므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다변하는 환경적 여건, 공간적 특성, 새로운 평가대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표 및 평가도구에 대한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 가치를 세밀한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평가대상인 계획 및 정책의 현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정량지표에 대한 기준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이후 평가대상이 되었던 계획 및 정책에 의한 문화적 영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과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과 평가대상 선정 기준, 평가지표 정의, 평가유형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이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침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지키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은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통해 고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문화영향평가 수행 실적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넘어서 문화영향평가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별도의 전문적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없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이렇듯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평가사업 수요도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 시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전담기관의 역할과 권한, 전담 조직, 예산 등의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설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평가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의 지정은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평가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체계 제도화와 평가 확산 및 실효성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필요한 기준은 지정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법을 통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평가수행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 즉, 평가수행기관의 지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때 지정 기준은 지정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법을 통해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평가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평가사업과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체계 제도화와 평가 확산 및 실효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의 지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4.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평가대상 관계자(정 책 소관기관 담당자,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평가수행 전 한차례 제한적으로 진행되 어 왔다. 그렇다보니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받았지만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지표, 평가서 작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전문가의 경우도 각각의 새로운 개념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가칭)문화영향평가시 스템을 통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평가대상 관계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교육도 전국의 문화영향평가 관계자로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교육을 분야에 따라 평가의 이해/평가지표/평가서 작성 방식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원하는 부분에 대해 쉽고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 인 도시재생대학의 커리큘럼 안에 문화영향평가 관련 과목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재 생사업 관계자 등에게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홍보 및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사회 내 문화영향평 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 추진된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거나 홍보자료집 제작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배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보다 우선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거 부감 및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포지셔닝을 새로 게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강제적·강압적인 평가가 아닌 규범적 평가로서 문 화영향평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공유하거 나 필요한 경우 슬로건 등을 개발하여 캠페인 내지는 공익광고를 하는 방안도 가능 할 것이다.

## 5.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제정

앞에서 언급한 「문화기본법」 등 현행법제 규정 개정을 통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미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일부수정해서 보완·적용한다는 것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법체계화에 있어서는 역시 구조적 한계가 예상된다. 그 보조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가칭)문화영향평가 대상·절차 및 방법 규정」) 마련 방안 역시 관련 조항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국가원리, 문화적 기본권, 「문화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본법」의 하위법이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방법·기준 등을 구체화시킨 개별법인 「문화영향평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기본법시행령」과 「문화기본법시행규칙」이 아니라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시행령」과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문화영향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 「문화기본법」 -> 「(가칭)문화영향평가법」 ->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시행령」 ->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등의 법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사후구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방법에 중점을 둔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필수불가결하다.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제5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과 제5항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입법한 이래 2014년과 2015년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앞으로 각 지역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이제 시행 5년차에 접어든 문화영향평가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법·제도적, 평가 수행 및 관리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적 차원에서 바라본 문화영향평가의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봄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수행의 확대를 대비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 평가대상 선정 기준, 평가지표 정의, 평가유형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의 표준평가지침(안)을 제안하여 문화영향평가의 행정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총괄부처 및 평가전담기관 지정과 기능 강화, 그리고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문화영향평가 관련법 및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구체적인 제·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및 타 영향평가의 사례들을 둘러싼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평가 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 차원에서 현재 문화영향평가가 갖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관계자 설문조사, 문화영향평가의 행정 활용도 향상을 위해 문화영향평가의 경험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출연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

를 수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선정에서부터 평가 결과의 환류에 이르는 평가 수행의 전 과정에서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선정에서부터 평가 결과의 환류에 이르는 평가 수행의 전 과정에서 정합성을 갖춘 제도로써의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영향평가가 산발적으로 시행될 시,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역별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 방법론 등의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져 객관적인 영향의 판단이 어렵게 된다.

문화영향평가 수행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제도가 설계하여 그 목적에 맞는 충실한 평가가 수행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시행 주체별 평가지표의 이해와 해석, 평가방법 마련 등으로 발생하는 행·재정적 비용과 평가시행 주체별로 상이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등 평가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시행 및 절차의 표준화를 정립하여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별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 평가대상 선정 기준, 평가지표 정의, 평가유형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의 표준평가지침 마련을 통한 공유는 문화영향평가의 정합성, 확장성, 지역별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평가 총괄부처 및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 동시에 평가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토, 데이터 수집·관리 및 활용, 지표풀 구축,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기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재,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과 최소한의 연구 진행으로는 이러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향후 문화영향평가 수요가 증대할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타 영향평가들이 관련 부처 내에 영향평가 전담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련법상에 다양한 명칭으로 지정된 평가전담기관 및 전담조직 내 충분한 인력을 보유한 안정

된 조직 구성 체계 하에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문화영향평가는 위와 같은 조직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중앙과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평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총괄부처와 평가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 협력 구조 등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등 현행법의 개정과 「(가칭)문화영향평가법」 마련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영향평가의 수행과 조직 관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법리적 근거가 여전히 약한 실정이다. 또 법 제·개정을 통해 명확한 평가대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법안 통과까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평가제도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영향평가 자체 수행을 위해 서로 다른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 일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향후 새로운 평가 수행과 조직 관리의 법적 방침들을 구체화, 명확화하고 늘어가는 평가 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논의된 「문화기본법」 등 현행법제 규정 개정을 통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미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일부수정해서 보완·적용한다는 것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법체계화에 있어서는 역시 구조적 한계가 예상된다. 그 보조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가칭)문화영향평가 대상·절차 및 방법 규정」) 마련 방안 역시 관련 조항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사후구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방법에 중점을 둔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필수불가결하다.

## 제2절 정책 제언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된 이후 정책 방향성 정립, 평가의 실효성 확보, 평가의 확장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우리사회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타 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운영에 계량화를 도입하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왔다. 물론 문화영역이 지닌 특유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현행 제도에서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평가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수요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정성적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단계별로 세부 계량지표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객관성 확보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소기준 혹은 최저 안전망 기준에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제도의 구축은 합리적인 평가과정으로 정립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문화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향평가의 운영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해 온 영향평가제도의 수행체계 및 사례조사를 참조하기 위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제도와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유럽의 통합영향평가 및 미국의 사회영향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수준의 대상범위, 지표문항,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

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UN의 SDGs에 맞추어 발표된 유네스코의 문화 2030 지표체계 및 지향성 등을 검토하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 및 추진방향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념과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현장에 맞게 정책지표를 보완발전시키면서 정책영역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등에서 다루는 항목들을 단일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연계를 통해 오늘날 사회의 복합적인 측면과 다차원적인 영향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으나 통합적인 연계평가를 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OECD 주요국들은 각 세부지표의 중복적인 측면을 줄이고 포괄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를 측정하고 있다. 각국의 현실 제도와 작동 환경에 일정한 차이를 두지만, 단순히 개별지표의 특정 분야만을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장기적으로 타 영향평가와의 상호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거시적 맥락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고용노동부(2020), 「20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권기창(2016),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15-423.
- 김성하·황선아(2016),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 김인서·나주몽(2018),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화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3), 451-466.
- 김종호(2019),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105-134.
- 김효정(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 문화영향평가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9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년 문화영향평가 안내 자료.
- 민인철(2018), 지역문화영향평가 개선 방안, 「광주전남연구」 11, 146-168.
- 배관표·최정민(2017), 문화영향평가,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로서 발전 방향, 「한국정책학회보」 26(1), 203-226.
- 양혜원(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성가족부(2020), 「2020 성별영향평가 지침」.
- 은평문화재단(2018), 「문화영향평가 실용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이경진·안지현(2018),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고,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 31-49.

- 이동연·이원재·최혁규(2015),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기초 연구」, 서울연구원.
- 이동연·김도형·김상철·이원재(2016),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개발 컨설팅」, 서울특별시.
- 이상열·박종웅·노수경(2018),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열·이경진·안지현(2018), 「문화영향평가 관련 국외 동향 및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열·이경진(2019), 「문화영향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채경진(2017), 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1(2), 217-23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지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9 문화영향평가 전문(심층)평가 지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9 문화영향평가 전문(심층)평가 지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지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 한승준·이용모(2016),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5(2), 337-362.
- 한승준·정상철·양혜원·채경진(2017),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학회.
- 환경부(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환경영향평가제도」.

#### 〈국외문헌〉

- LGASA(2015), 「South Australian Cultural Impact Guide: A guide to consider the impact of any decision on culture」.
- Partal, A. & Dunphy, K.(2016), Cultural impact assessmen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urrent methods and practice around the world,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34(1) 1-13.
- Robertson, C.(2008),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EIPASCOPE* 2008/2, 17-20.

### 〈법률 자료〉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과학기술기본법」
- 「문화기본법」
- 「문화기본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온라인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mogef.go.kr](http://gia.mogef.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이뉴스투데이(2020. 5. 4)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관계법령 개정”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70>)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http://www.elis.go.kr))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www.kli.re.kr](http://www.kl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wdi.re.kr](http://www.kwdi.re.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www.kei.re.kr](http://www.kei.re.kr))
- 환경부 홈페이지([me.go.kr](http://me.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http://www.eiass.go.kr))



---

# ABSTRACT

##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for Legislation and Operating System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thods to impro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by exploring the practical problem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evaluati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legislation and institu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seeks to identify measure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support various type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in preparation for the revision of law, and the expans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local trends relating to case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nd other impact assessment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order to present methods to improve the legislation and operating system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In addition, a survey for the people concerned with this matter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he futur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terms of evaluati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legislation and institution other than the overall recognition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in administration, a focus group interview(FGI) has been carried out for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who have experiences in cultural impact assessments, from both metropolitan and basic units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derived from the above survey and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ultural impact assessments should increase their function as a coherent

system in their entire process of evaluation performance, from selecting evaluation targets to feedback and results. In particular, problems may arise in the evaluation performance, such as feasibilities and comparabilities of evaluation results being reduced due to the different evaluation indices and methods applied by the different subjects which perform evaluations, particularly if various type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re sporadically implemented by the different local governments. Therefore, plans must be prepared and shar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standardize the implementation and procedure of the system, meeting various demands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n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their utilization, depending on the regions. In particular, preparing and sharing standard evaluation guidelines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s, including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method, procedure, and criteria for selecting the target of the evaluation, definition of evaluation indices, type, method, and procedure of evaluation, and so forth, as a minimum standard to implement evaluation performance, will be useful in terms of coherence, expandability and the regional availability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Secondly, in order to perform cultural impact assessments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a central department-level evaluation management division and a special agency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designed, its functions strengthened, and will be exclusively in charge on a working level. In particular,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does not have an organizational system, unlike other impact assessments for which exclusive departments and officials in charge are designated by the relevant agencies. Therefore,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 stable way, and an organizational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which the central department division and the agency for the evaluation management can maintain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s organizationally in their respective roles and functions. In this way, evaluation projec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an be promoted in balance, while an expansion of evaluation, and an increase of effectiveness can be expected.

Thirdly, revision of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is nee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longside the enactment of a tentatively named “Act on Cultural Impact Assessments”. Currently,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e still weak in their legal grounds in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performing the above-mentioned cultur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managing the organizations. Furthermore, requests for establishing a clear target of evaluation through revision and enactment of the laws have been made continuously, but bills have not yet been passed at this stage. 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different ordinances to perform their own cultural impact assessments. Therefore, the advent of an institutional guideline is now inevitable for the purposes of embodying and clarifying legal policies for new performance appraisal and organization management, and to embrace growing demands for evaluation in the future.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system with a focus on, and a basis in, a preventive system, rather than the post-relief method. Thus,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system to maximize the positive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a culture should be strengthened by minimizing the negative elements related to culture in the policy, and by maximizing its competitive edges. The efforts to revise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nd its enforcement decrees, which have been discussed thus far, have limitations in securing a new institutional system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s they simply attempted to revise already-failed policies aimed at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n to apply them to supplementary purposes. As a result, there is an urgent and indispensable nee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Cultural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rebuild the essential function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 **Keywords**

Cultural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Management, Legislation and Institution, Standard Implementation, Revision/Enactment of Law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부록**



## 【부록1】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2014~2020)

### □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2020년 5월 말, 평가완료 기준)

연도	평가시행 주체	평가대상			
		명칭	내용	소관기관	
2014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청각장애인 교육시설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체육관광부	
		도시재생 정책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2015	문화체육 관광부	새뜰마을 사업	마을재생(주거여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시장 경영혁신 지원	중소기업청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강원도	
2016	문화체육 관광부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연합기숙사 건립 및 운영	공공시설 건립	교육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도농교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로컬푸드 유통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유산 보존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유산 활용	문화재청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대구광역시 남구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광주광역시 서구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상북도 안동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지구 조성	인천광역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 정비	경기도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공공시설 건립	경기도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청년창업 지원시설 조성	경기도 시흥시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관광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연도	평가시행 주체	평가대상		
		명칭	내용	소관기관
2017	문화체육 관광부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고도지역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문화재청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도시재생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전광역시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문화특화지역 조성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 조성	강원도 원주시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문화시설 건립	강원도 강릉시
		소통과 화합의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공간 조성	경기도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장년층 이후 세대의 복지 및 창업 지원	서울특별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생태 복원	경기도 부천시
		광주비엔날레	국제 규모 예술행사	광주광역시
2018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부 협력)	시간, 자연, 공간, 사람의 단절을 잇는 ‘구포 이음’	(국토부)도시재생	부산광역시 북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프로젝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		세종특별자치시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 문화 재생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외의 관문으로 통하다		경기도 수원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경기도 시흥시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강원도 강릉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충청북도 청주시
		新경제·교통 중심의 복합스마트거점공간 천안 역세권		충청남도 천안시
		다시 열린 “군산의 물길” 그리고 “짜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전라북도 군산시

연도	평가시행 주체	평가대상			
		명칭	내용	소관기관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전라북도 익산시	
		지역 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 제도시, 정읍		전라북도 정읍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라남도 목포시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들		전라남도 순천시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경상북도 영천시	
		포용과 화합의 무게		경상남도 김해시	
		영천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경상북도 영천시
		김해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경상남도 김해시
		경주월성(신라왕궁) 복원정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	문화재청
		원주천 댐 건설사업		댐 건설사업	강원도 원주시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국토부)도시재생	인천광역시 중구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경기도 안양시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역말 공동체! 만남 마을!	충청북도 음성군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향교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전라남도 광양			
	다시돌양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 특별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공간 조성	서울특별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문화시설 건립	경기도		
2019	문화체육 관광부	모인다, 보여준다, 재생한다 '三和' 새로운 도전! 홍도마을 공동체 살리기	(국토부)도시재생	강원 동해시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경북 김천시	
		진주시 역사문화 도시재생 Enjoy the City!! 매력공감 원도심 만들기		경남 진주시	

연도	평가시행 주체	평가대상			
		명칭	내용	소관기관	
		거제시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VICI OKPO)		경남 거제시	
		거인 문화가 스며든 맘(Mom)드림(Dream) 생태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신규경기문화창조허브운영-에코디자인 창업 지원센터 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공간 조성	경기도 광명시	
		원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강원도 원주시	
		수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경기 수원시	
		춘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강원 춘천시	
		서울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빈집프로젝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체부)문화도시	강원도 강릉시	
		오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기도 오산시	
		진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통영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상남도 통영시	
		정읍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라북도 정읍시	
		나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라남도 나주시	
		제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재울 마을 도시재생사업		(국토부)도시재생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체 중심의 공유재생, 세대가 통(通)하는 두문마을			경기도 시흥시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만들기			강원도 원주시
		하늘을 담은 행복예술촌...골목이 주는 위로	대전광역시 동구		
		백년의 기억, respect 소리골	전라북도 익산시		
		공(存), 공(生), 공(感)으로 만들어가는 상성마을 행복이야기	전라북도 임실군		
		서로의 우산이 되는 자우산 마을	전라북도 전주시		
		사람, 도시의 역사 그리고 장흥의 변화	전라남도 장흥군		
		성동·황오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경라남도 경주시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東光)언덕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1·3세대가 함께하는 왕띠마을 우리 동네를 살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경상남도 의령군		
		동거동락 공감마을 만들기 라이프메이트 유등마을 도시재생	경상남도 진주시		

연도	평가시행 주체	평가대상		
		명칭	내용	소관기관
		다시 그린(GREEN) 대티고개 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변 프로방스를 꿈꾸는 불암장어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거창의 「미래 행복」을 마디마디 담아 성장하는 밤부공동체 “죽전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소가야 역사와 월이의 열이 깃든, 무학마을 리뉴얼		경상남도 고성군
		수리수리 마을수리, CHANGE UP 서변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달비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 특별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시설 건립 및 공간 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운영 사업	공원 조성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 문화재생 3단계 사업	도시재생	경기도 부천시	
	광명 골목숲 URBAN PROMENADE	(국토부)도시재생	경기도 광명시	
	평택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경기도 평택시	
	하남시 도시재생사업 및 문화도시 조성	(국토부)도시재생 (문체부)문화도시	경기도 하남시	
202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경상남도 창원시

## 【부록2】 설문조사 양식

###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자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은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문화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문화영향평가의 인식, 평가수행, 조직관리, 법·제도의 개선안 도출과 더불어 문화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연구담당	<p>연구책임: 김 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윤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후연구원)</p> <p>공동연구: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장인호(경찰대학교 부교수)</p>
문의처	<p>(주)글로벌리서치</p> <p>담당: 최정희 차장 TEL: 02-3456-1881 담당: 송미영 차장 TEL: 02-3456-1902 FAX: 02-3456-1996</p>

# 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 ■ 문화영향평가의 개념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제도임

## ■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배경



## ■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경과

연도	추진내용
2013	• 「문화기본법」 제정(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및 법 제5조제4항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2014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5호, 2014.9.11.)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교통부의 4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2015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및 강원도의 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2016	• 총 1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2017	• 총 1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영향평가(광주광역시) 시행 지원 1건 포함
2018	• 총 3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주 월성(신라왕궁) 발굴·복원사업 등 총 2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실시 - 10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활용한 약식평가 10건 추진
2019	• 총 3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 평가 실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활용한 약식평가 18건 추진

**문 1**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점수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1-1. 중요성							문 1-2. 필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문 2** (과거~현재 기여도 평가)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기여하지 못함	그다지 기여하지 못함	보통임	약간 기여함	매우 기여함
	(문 2-1로)		(문 3으로)		
문 2-1.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1	2	3	4	5
문 2-2.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서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 확대	1	2	3	4	5
문 2-3.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 의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강화	1	2	3	4	5
문 2-4.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 의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해소	1	2	3	4	5

**문 2-1** (과거~현재 기여도 평가)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영향평가가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문 2-1-1.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 2-1-2.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서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 확대		
문 2-1-3.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 의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강화		
문 2-1-4.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 의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해소		

- ① 평가수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근거가 미약함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진의지가 부족함
- ③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④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이 불명확함
- ⑤ 평가지표, 지표의 측정 방법 등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이 미흡함
- ⑥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가 부족함
- ⑦ 문화영향평가를 관리·지원하는 행정 조직의 전문성, 체계성, 효율성 제고 노력이 미흡함
- ⑧ 평가대상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계획 수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
- ⑨ 아직까지 평가수행자, 수행 혹은 대행기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함
- ⑩ 기타(자세히: )

**문 3** (미래 기여도 평가) 향후 문화영향평가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임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것임	보통임	약간 기여할 것임	매우 기여할 것임
문 3-1.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1	2	3	4	5
문 3-2.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서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 확대	1	2	3	4	5
문 3-3.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 의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강화	1	2	3	4	5
문 3-4. 평가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추진에 의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해소	1	2	3	4	5

## II.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수행 개선 방안

### ■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주체

-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시행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함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이라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의 주체가 됨

###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법 제5조제4항)이며, 시행주체에 따라 다음처럼 구분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 중앙행정기관 미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특정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문 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영향평가를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가 유형, 평가수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기관별로 각기 다른 평가유형 및 수행 방식의 차이를 좁히고 일정 수준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준 평가틀: 각각의 평가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프로세스로서 평가유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 대상, 평가항목, 평가기간, 평가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문 5로)		(문 4-1로)		
1	2	3	4	5

**문 4-1** 문화영향평가 표준 평가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선택
① 평가목적 및 평가원칙		
② 평가대상	②-1 평가대상의 범위	
	②-2 평가대상 선정방식	
③ 평가 시기 및 기간		
④ 평가절차		
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⑥ 평가서 작성 방식		
⑦ 평가결과 처리	⑦-1 평가결과 공개	
	⑦-2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방식	
	⑦-3 평가결과 자문 등 전문가 활용	
⑧ 기타	(자세히: )	

**문 5** 올해 2020년 문화영향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현재 문화영향평가 유형〉

유형	평가 심도	평가 방식	평가 기간	절차	평가자
자체 평가	진단 평가	관련 사업(정책)에 대한 자체 진단	1개월 이내	사업담당자가 진단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 검토 및 의견 송부→반영계획 제출	사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약식 평가	관련 사업(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 검토·평가	1 ~ 2개월	사업담당자가 약식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의 평가결과 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사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 전문가 평가위원
전문 평가	기본 평가	일반·단일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	4 ~ 6개월	외부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반영 계획 제출	전문 평가수행기관
	심층 평가 (전략 포함)	다년도 종합사업(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	6 ~ 7개월	평가기관으로 공모·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및 주민 설문조사→반영계획 제출	전문 평가수행기관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심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을 정립해야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고려 사항	선택
① 계획 또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	
② 계획 또는 정책의 내용	
③ 계획 또는 정책의 문화 분야 관련성	
④ 계획 또는 정책의 진행 단계	
⑤ 계획 또는 정책의 핵심 요소가 지닌 성격	
⑥ 계획 또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⑦ 계획 또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범위	
⑧ 계획 또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인적 범위	
⑨ 계획 또는 정책의 소관기관	
⑩ 계획 또는 정책의 예산 규모	

**문 6** 다음 사업들 중 문화영향평가의 의무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평가대상	의무적 평가대상
①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중인 법령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⑤ 지능정보화사업	
⑥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⑦ 국어 발전 기본계획	
⑧ 관광개발기본계획	
⑨ 국토종합계획	
⑩ 도시기본계획	
⑪ 도시경관관리계획	
⑫ 국토교통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⑬ 지역사회보장계획	
⑭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⑮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⑯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 대상 중 중앙심사 대상사업	

평가대상	의무적 평가대상
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조성	
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조성	
⑳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및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	
㉑ 도시(재)개발사업	
㉒ 각종 특구 지정·개발사업	
㉓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조성	
㉔ 상권활성화 사업	
㉕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농촌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	
㉖ 어촌뉴딜300 사업	
㉗ 광역관광개발사업	
㉘ 지역관광개발사업	
㉙ 생태관광지역 지정	
㉚ 문화재(문화유산) 복원·활용사업	
㉛ 다문화가족지원사업	
㉜ 국제이벤트 개최	

**문 7**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 측정 문항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li> <li>■ 사업으로 문화접근성이 저하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li> </ul>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표현기회와 창작활동이 저하되는가?</li> <li>■ 사업자는 사업 계획 및 시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li> </ul>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기본적 가치에 훼손을 주었는가?</li> <li>■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가 저해되는가?</li> </ul>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문화를 훼손하는가?</li> <li>■ 사업으로 사회적 관계 속 구성원 간 분열과 대립이 유발되는가?</li> <li>■ 사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 문화예술인과 지역단체 간 교류와 협력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li> </ul>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지역 내 문화적 획일화에 영향을 주는가?</li> <li>■ 사업으로 지역사회 소수집단의 문화적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가?</li> <li>■ 사업으로 문화 소비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가?</li> </ul>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사회구성원들의 창의성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li> <li>■ 사업이 지역사회 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li> </ul>

위 평가영역, 지표, 문항을 볼 때, 각 지표별 문화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하다(문 7-1로)
- ② 정량적 평가도구가 필요없다(정성적 평가도구만으로도 충분하다)(문8로)

**문 7-1** 다음 중 정량적 평가도구가 가장 필요한 평가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평가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선택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 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가능성, 사회적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문 7-2** 문화영향평가에 제안해주고 싶은 정량적 평가도구(방법)가 있다면 자유롭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정량적 평가도구(방법) 제안

**문 8** 문화영향평가의 확산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평가(사업 소관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평가)와 전문평가(외부의 전문평가수행기관이 평가) 각각에 대해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자체평가	전문평가
① 표창 및 수상		
②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컨설팅 제공		
③ 문화영향평가 수행 실적을 동 사업에 대한 여타 심사의 지표에 포함시킴		
④ 심도가 더 깊은 추가평가 혹은 후속평가 수행 지원		
⑤ 평가결과에 대한 포럼 등 홍보 지원		
⑥ 기타(자세히: _____ )		

### Ⅲ. 문화영향평가의 조직관리 개선 방안

※ 타 분야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의 조직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내 평가전담부서 및 인원	○ (11명)	○ (9명)	○ (1명, 별도 대행기관 존재)	X (1명)
평가전담기관 법적 지위	전문기관	평가기관	대행기관	지원기관
평가전담기관 지정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법에 평가전담기관 기능 명시 여부	○	○	X	X
평가전담기관 직접 평가수행 여부	X	△	○	△ (제한적 추진)
지역 평가전담기관 설치 여부	X	○	X	X
평가전담기관 내 공식적 평가전담조직 설치 여부	○	○	○	X
기관 내 평가 업무 담당 조직(부서) 인원	50명	8명	11명	5명

**문 9** 타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간의 조직관리 체계를 비교해볼 때, 문화영향평가는 다음 중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개선 필요 사항	1순위	2순위
① 중앙행정기관 내 평가전담부서 설치 및 적정인원 배치		
② 평가총괄기관으로서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적 지위 명시 및 강화		
③ 평가전담기관으로서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법적 지위 명시 및 강화		
④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평가전담기관 기능 명시		
⑤ 평가전담기관의 직접 평가수행을 위한 제도 마련		
⑥ 중앙-지역 평가전담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평가 거버넌스 구축		
⑦ 평가전담기관 내 평가전담조직(예: 문화영향평가센터 등) 설치		
⑧ 평가관련 업무 전담 인원의 증대		
⑨ 기타(자세히: )		

**문 10** 문 9의 답변 외에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더 강화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향후 강화 요소	1순위	2순위
① 평가수행 총괄 및 지원		
② 문화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평가방법(R&D) 연구		
③ 문화영향평가 관련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④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 지원 및 관리		
⑤ 문화영향평가 관련 각종 자문		
⑥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담당자 교육		
⑦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⑧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⑨ 문화영향평가 홍보 및 대외협력		
⑩ 평가결과 모니터링 및 관련 DB 구축		
⑪ 기타(자세히: )		

#### IV. 문화영향평가의 법·제도 개선 방안

##### ■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임
-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문 11**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평가대상의 범위			
② 평가대상의 선정 방식			
③ 평가기간			
④ 평가유형			
⑤ (유형별 표준) 평가절차			
⑥ (유형별 표준) 평가항목			
⑦ 평가 총괄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명시			
⑧ 평가전담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명시			
⑨ 평가결과 보고 및 개선, 권고 등의 환류 방식			
⑩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역할			
⑪ 기타(자세하: )			

**문 12** 향후, 평가의 실효성, 효율성, 인식 확산 제고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별도의 법(예를 들면, 가칭 「문화영향평가법」)을 제정하거나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문 12-1로)
- ②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으나 현행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문 12-1로)
- ③ 별도의 법 제정이나 현행 법 개정 모두 필요하지 않다(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문 13으로)

**문 12-1**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항목이 조항에 포함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선택
법적 성격	① 법정평가로서의 강제성 강화(사업·정책 계획 및 시행 시 문화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 함)	
평가대상	② 평가 대상의 범위 구체화(사업의 시·공간적 범위, 규모, 예산, 문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	
	③ 의무적 평가대상 사업 및 계획 지정 명시	

항목		선택
평가수행	④ 평가유형별 체계와 평가수행방식	
	⑤ 평가서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⑥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⑦ 평가 결과 반영 및 관계기관 협조·이행사항 등을 위한 장치	
협치	⑧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영향평가 협치 체계	
	⑨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위원회, 협의체, 심의회 등) 구축 및 역할	
교육 및 자문	⑩ 문화영향평가 관련자 교육	
	⑪ 전문가 자문	
조직	⑫ 평가총괄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명사와 역할	
	⑬ 평가전담기관 및 조직의 지정 및 기능	
기타	⑭ (자세히: )	

**문 13**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평가전담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② 제시해 줄 필요가 없다

## V. 종합의견: 문화영향평가의 발전 방향

**문 14** 문화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은 시급성과 중요성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의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시급성과 중요성의 체크 항목이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시급성			항목	중요성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유형 방안 마련			
			② 평가유형별 평가틀(평가 프로세스)의 표준화			
			③ 평가대상 범위의 구체화			
			④ 의무적 평가대상에 대한 법적 지정			
			⑤ 평가항목 및 지표 개선			
			⑥ 평가방법론 개발(정량, 정성)			
			⑦ 문화영향평가 총괄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적 명시 및 위상 제고			

시급성			항목	중요성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⑧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행정 개선을 위한 지원			
			⑨ 중앙-지역 간 평가수행의 협치 및 정합성 구축			
			⑩ 문화영향평가 위원회 등 협력체계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평가추진체계 정비			
			⑪ 평가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⑫ 문화영향평가의 당위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			

※ 응답자 특성 파악 및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DQ1. 성명			
DQ2-1. 소속		DQ2-2. 직위/직책	
DQ3. 전문 분야		DQ4. 해당 분야 종사기간	만    년    개월
DQ5. 평가 참여 경험	① 평가수행기관 연구진으로 참여 ②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③ 자문위원/심사위원 등으로 참여 ④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⑤ 여타 영향평가 관련 연구 수행 경험 ⑥ 평가대상 사업 혹은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로 참여 ⑦ 기타(평가 참여 경험 필수 기재: _____ )		
답례품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일부, 제5장 제2절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2장 제1절 일부, 제4장, 제5장 제1절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제1장 일부, 제2장 제1절 일부,  
제2절~제3절, 제3장

### 공동연구

-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제4장 제3절 일부  
장인호 경찰대학 부교수: 제4장 제4절 일부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1월 17일

발행일 2020년 11월 17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33-1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23>

www.kcti.re.kr

#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for Legislation and Operating System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23>

Kim Myun Lee Kyeong Jin Kim Yun Kyoung

